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27대 국교련 제9차 회의 : 정기총회

일시

2025년 1월 24일(금) 15:00

장소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 회의실 + 줌회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s

📍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63번길 2 교수회관 2층

☎ 051-510-1396

✉ newknupa@naver.com

제27대 국교련 제9차 회의 : 정기총회

1. 전체회장단회의 개요

- 일 시 : 2025년 1월 24일(금) 15:00
- 장 소 :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 회의실 및 줌회의
☞ Zoom 회의 : (ID) 873 5736 7059, (PW) 1396
- 참석대상 : 국교련 회원교 회(의)장단 및 상임위원

2. 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5:00	□ 등록 및 줌 회의실 참여 :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 회의실	
15:00~15:15	□ 국민의례 □ 성원 보고 (김지현 사무총장) □ 개회선언 및 인사말 (김정구 상임회장)	
15:15~15:40	□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선출 1. 후보자 정견발표 (15:15~15:30) 2. 온라인 투표 (15:30~16:30) 3. 개표 및 당선자 발표 (16:30~17:00)	선거관리위원회 : 국립부경대학교
15:40~15:50	□ 제27대 국교련 업무 보고 1. 활동 보고 2. 회원교 연회비 납부 현황 3. 결산 보고	
15:50~16:10	□ 제27대 국교련 제8차 전체회장단 회의록 보고 □ 활동 보고 1. 전국교수연대회의 부산지역 토론회 주관 2. 제26대 국교련 유진상 상임회장 감사패 증정 3. 비상계엄령 시국 성명서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 제출 5. 신임 회(의)장단 소개 6. 보도자료 및 주요 동향 - 글로벌대학·라이즈, 원활히 추진? 대학은 '답답' - 국립대, 교육·연구 중심으로 개편...대학재정, 등록금 자율화부터 - 사립대 총장 48명 "2025년 등록금 인상 계획" - [2025 신년사] 김정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7. 공문 발송	

16:10~17:00	<input type="checkbox"/> 논의사항 1. 온라인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선거 - 대학 교원의 복무규정(12.11.)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자격 - 코러스 사학재단 운영 관련 문제 제기 필요 - 전국교수연대회의에 대한 국교련 입장 -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근거한 학교별 규정 마련 - 국교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제9차 회의 : 정기총회 회의장소 변경 2. 기타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교련 워크샵 계획(2월16~17일) 	
17:00~17:10	<input type="checkbox"/>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선거 개표 및 당선자 발표	
17:10~	<input type="checkbox"/> 폐회	

○ 2일차 일정은 비대면회의로 전환됨에 따라 없음

목 차

순번	내용	쪽
I	□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선출	3
II	□ 제27대 국교련 업무 보고	9
	1. 활동 보고	9
	2. 회원교 연회비 납부 현황	13
	3. 결산 보고	14
III	□ 제27대 국교련 제8차 전체회장단 회의록 보고	29
IV	□ 활동 보고	41
	1. 전국교수연대회의 부산지역 토론회 주관	41
	2. 제26대 국교련 유진상 상임회장 감사패 증정	42
	3. 비상계엄령 시국 성명서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43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 제출	45
	5. 신임 회(의)장단 소개	50
	6. 보도자료 및 주요 동향	51
	7. 공문 발송	58
V	□ 논의사항	65
	1. 온라인 논의사항	65
	2. 기타 안건	77
VI	□ 첨부자료	81
	1. 국교련 회칙	81
	2. 제27대 국교련 일정	85
	3. 제27대 국교련 회원교 연락처	86
	4. 제27대 국교련 상임위원회 연락처	96

I .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선출

1. 선거일정

NO.	일자	내용	공문번호	첨부분서
1	2024.12.23.	선거 공고	001	회칙, 선출규정, 후보 신청서
2	2024.12.30.	후보 등록 공문	002	후보 신청서
3	2025.01.02.	선거인 명부 확인	003	선거인 명부
4	2025.01.10.	입후보자 공고	004	후보 신청서, 홍보 방법 ^{*1}
5	2025.01.17.	선거인 명부 확정	005	선거인 명부 확정, 개인정보 수정
6	2025.01.20.	선거 방법 안내 및 선거인 명부 수정	006	선거방법 ^{*2} , 개인정보 수정
7	2025.01.23.	재안내	007	선거방법, 개인정보 수정
8	2025.01.24.	선거 공표	008	당선인 공표 ^{*3}
9	2025.01.28.	당선인 확정	009	당선인 확정 및 공고

*1. A4 1매 이내, 이메일 등 온라인 홍보(19~08시 전화, 메시지, 카톡 금지)

*2. 온라인 선거 업체 선정, 후보자 수에 따른 투표 방법 확정

*3. 3일 이내 이의 신청

2. 제28대 상임회장 후보자 등록 현황

NO.	공고일자	성명	소속	비고
1	2025.1.10.	우홍명	강원대학교 교수회장	

3. 국교련 상임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국교련 상임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2021.12.10. 국교련 총회에서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회칙 제6조 제1항의 국교련 상임회장 선임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① 국교련 상임회장 선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교련 내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 직전 국교련 총회에서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의 추천을 받아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권한)

- ①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선거 일시 및 장소의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3. 입후보자 자격심사
 4.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5. 투·개표 관리
 6. 그 밖의 선거와 관련된 업무
- ②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투표지의 유효여부 판정
 2. 이의의 심사 및 판정
 3. 선거결과의 공표
 4. 당선자 확정 및 보고
 5. 그 밖의 선거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

제4조(선거권과 피선거권) 국교련 회칙 제7조 제1항에 의한다.

제5조(선거일)

- ① 상임회장 선거일은 현직 상임회장 임기만료 전 50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속하는 달의 국교련 총회일로 한다.
-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 ① 국교련 상임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전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교련 회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자격심사를 하고, 선거일 10일 전까지 후보등록사

실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제7조(선거운동의 방식 및 이의신청) ①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선거홍보자료 제공
 2.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일시와 방식에 따른 선거운동
- ②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선거운동 방식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 방식의 계속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선거방식과 당선자 결정) ① 선거는 국교련 회칙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의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한다. 이 경우 전자투표의 방식도 허용된다.

- ② 투표에서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유효투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결선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차 투표와 결선투표를 합산하여 유효투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의 찬성을 얻은 경우 당선자로 한다.
- ⑤ 제9조의 이의신청이 3일 이내에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을 확정·공고한다.

제9조(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선거) ①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결과 공표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을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판정한다.
- ③ 당선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당선무효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판정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 이 규정에 있는 사항을 제외한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12.10. 총회에서 제정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정 규정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제25대 상임회장 선거에 한해 2022년도 2월 중에 선거를 실시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문(~25.1.20.현재)




국교련 선거관리위원회

수 신 전체 회원교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 회(의)장 및 임원 재위
 참 조


제 목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선출 안내

- 귀 대학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일정 안내드립니다.
 - 가. 선거 공고 : 2024년 12월 23일(월)
 - 나. 후보자 등록기간: 2025년1년2일(목) 9시~2025년1월9일(목) 18시
 - 다. 접수방법: '국교련 상임회장 후보등록 신청서' 작성 후 스캔 본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 faculty@pknu.ac.kr로 송부
 - 라. 추후일정
 - 입후보자 공고: 2025년 1월 10일(금) 9시
 - 입후보자 홍보 기간: 2025년 1월 10일(금) 10시~1월 23일(목) 18시
 - 선거인 명부 확정 : 2025년 1월 17일(금) 18시
 - 상임회장 선거(투표 및 개표): 2025년 1월 24일(금) 15시
 - 15:00 ~ 16:00 후보자 정견발표 및 토론
 - 16:00 ~ 17:00 온라인투표
 - 17:00 투표 완료 시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기타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교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간사 김재영 위원 공홍식 김지현 장진호 최인호 위원장 정석호
 시행 선관위27-001 (2024.12.23.) 접수 (2024. . .)
 주소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본부 6층 5호
 전화 051-629-7321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 사무실) E-mail: faculty@pknu.ac.kr /공개




국교련 선거관리위원회

수 신 전체 회원교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 회(의)장 및 임원 재위
 참 조


제 목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후보 등록 안내

- 귀 대학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후보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 가. 후보자 등록기간: 2025년1년2일(목) 9시~2025년1월9일(목) 18시
 - 나. 접수방법: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후보등록 신청서' 작성 후 스캔본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 faculty@pknu.ac.kr로 송부
 - 다. 추후일정
 - 입후보자 공고: 2025년 1월 10일(금) 9시
 - 입후보자 홍보 기간: 2025년 1월 10일(금) 10시~1월 23일(목) 18시
 - 선거인 명부 확정 : 2025년 1월 17일(금) 18시
 - 상임회장 선거(투표 및 개표): 2025년 1월 24일(금) 15시
 - 15:00 ~ 16:00 후보자 정견발표 및 토론
 - 16:00 ~ 17:00 온라인투표
 - 17:00 투표 완료 시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기타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교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간사 김재영 위원 공홍식 김지현 장진호 최인호 위원장 정석호
 시행 선관위27-002 (2024.12.30.) 접수 (2024. . .)
 주소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본부 6층 5호
 전화 051-629-7321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 사무실) E-mail: faculty@pknu.ac.kr /공개




국교련 선거관리위원회

수 신 전체 회원교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 회(의)장 및 임원 재위
 참 조


제 목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온라인투표 선거인 명부 확인 요청

- 귀 대학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인 명부를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시고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가. **(붙임1)선거인 명부_250102** 파일에서 귀 대학의 선거인 성명과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선거인 명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붙임2)선거인 명부 변경 신고서_250102** 파일을 작성하여 2025년 1월 17일(금) 17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회신해 주십시오.
 - 다. 선거인 명부 확정(2025년 1월 17일(금) 18시) 후에도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 명부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교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간사 김재영 위원 공홍식 김지현 장진호 최인호 위원장 정석호
 시행 선관위27-003 (2025.01.02.) 접수 (2025. . .)
 주소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본부 6층 5호
 전화 051-629-7321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 사무실) E-mail: faculty@pknu.ac.kr /공개




국교련 선거관리위원회

수 신 전체 회원교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 회(의)장 및 임원 재위
 참 조

제 목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입후보자 공고

- 귀 대학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선거 입후보자를 공고합니다.
- 입후보자 명단(단일후보)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우홍명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 홍보 방법
 - 가. 홍보 인쇄물 : 등록 신청서로 같음
 - 나. 홍보 방법 : 전화, 메시지, 카톡 등은 오전 8시 ~ 오후 7시 가능
이메일은 24시간 가능
 - 다. 홍보 기간 : 2025년 1월 10일(금) 10시 ~ 1월 23일(목) 18시
 - 라. 정견 발표 : 2025년 1월 24일(금) 15시 ~ 16시
- 기타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교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간사 김재영 위원 공홍식 김지현 장진호 최인호 위원장 정석호
 시행 선관위27-004 (2025.01.10.) 접수 (2025. . .)
 주소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본부 6층 5호
 전화 051-629-7321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 사무실) E-mail: faculty@pknu.ac.kr /공개

II. 제27대 국교련 업무 보고

업무보고 1. 활동 보고

1. 제27대 국교련 회의

○ 총9회 실시

NO.	회의명	일시 및 장소	참석	비고
1	제1차 회의 : 임시총회	2024.3.22. 부산대학교	29개교 (75%)	
2	제2차 회의 : 상임위원회	2024.4.26. 부산대학교	상임교 9개교 그 외 회원교 7개교	
3	제3차 회의 : 상임위원회	2024.5.24. 경상국립대학교	상임교 11개교 그 외 회원교 11개교	
4	제4차 회의 : 전체회장단회의	2024.6.21. 더케이호텔(서울)	18개교 (47%)	제1차 정책포럼
5	제5차 회의 : 전체회장단회의	2024.8.16. 부산대학교	21개교 (55%)	故고현철 교수 9주기 추도식
6	제6차 회의 : 전체회장단회의	2024.9.27. 국립부경대학교	27개교 (72%)	정책세미나
7	제7차 회의 : 전체회장단회의	2024.10.25. 한국교원대학교	28개교 (75%)	정책 간담회
8	제8차 회의 : 전체회장단회의	2024.11.22. 제주대학교	30개교 (80%)	제2차 정책포럼
9	제9차 회의 : 정기총회	2025.1.24. 부산대학교+Zoom의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선출

○ 활동사진



2. 정책포럼(심포지움) 및 세미나

○ 총4회 실시

NO.	회의명	일시 및 장소	비고
1	1차 정책포럼 : 지방대학 발전방안	2024.6.21. 더케이호텔(서울)	발제1. 국공립 대학의 미래 김종영(경희대) 발제2. 지방대학이 살아남으려면? 김무환(국교위 지방대학특위 위원장) 발제3. 지방대학 발전방안 김정구(부산대) 발제4. 무전공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토론 : 조정호(한국체육대), 박태현(강원대)
2	2차 정책포럼 : 국립대학법	2024.11.22. 라마다시티호텔(제주)	발제1. 국립대학법 연구 윤수정(강원대), 박종원(국립부경대) 발제2. 고등교육법 전면개정안 연구 박태현(강원대) 토론 : 최인호(충남대), 김대경(제주대), 김동근(전북대), 길민서(교육부 규제혁신추진단)
3	정책세미나1	2024.9.27. 국립부경대학교	발제 : RISE 도입에 따른 법제도 개편과 지방대학의 과제, 박철우(한국공학대)
4	정책세미나2	2024.10.25. 한국교원대학교	발제 : 교육개혁과 RISE,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린다, 윤소영(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 활동사진



3. 정책연구 및 현안과제

○ 정책연구

NO.	과제명	연구진	주요내용	지원예산
1	지방대학 발전방안 연구	김정규/김지현/박경현(부산대), 김용(한우고원대)	지방대학의 지속가능 발전 확립을 위한 연구	비에산(국교위)
2	국립대학법 제정안 연구	박태현,윤수정(강원대), 박종원(국립부경대)	국립대학법안 현행화를 위한 개선 연구	3,000천원

○ 개정법률안 및 현안과제

NO.	과제명	연구진	비고
1	교육부의 무전공 선발 도입·확대 방침 대응 마련	정책위원장 등	
2	총장선거비율 현행화 및 분석	정책위원장 등	
3	대학총장 임용추천자 선거, 학생의 투표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7.16) 반대 의견검토	정책위원장 등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23) 의견검토	정책위원장 등	
5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10.30) 의견검토	정책위원장 등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5) 의견검토	정책위원장 등	

4. 성명서

NO.	제목	일시	대응	비고
1	[긴급 성명]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촉구	2024.3.29.	보도자료	
2	[부교련]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산시립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4.6.17.	보도자료	부산권국립대학 교수회연합회
3	비상계엄령 시국 성명서	2024.12.4.	보도자료	

5. 회원교 지원 및 외부 활동

NO.	제목	일시	참석	비고
1	총선 이후 교수연대 활동방안	2024.4.19.	최인호, 유진상	회의참석
2	지방대학 발전방안 심포지움 개최	2024.5.14.	김정구 상임회장	
3	현장답사 : 해운대 요트 탐방	2024.5.15.	김정구 상임회장 외 회원교 회(의)장단	
4	전국교수연대회의 워크숍	2024.5.25.	최인호, 유진상	
5	현장답사 : 진주성 및 김시민호 크루즈 탐방	2024.5.25.	김정구 상임회장 외 회원교 회(의)장단	
6	사단법인 고현철교수기념사업회 연회비 납부	2024.6.17.		1년분 회비납부
7	전국교수연대회의 회비 납부	2024.8.9.		~2025.2월분 회비납부
8	한강 크로스스위밍 챌린지 및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회 방문	2025.6.22.	김정구 상임회장, 장진호, 김동근, 강은숙, 김원필, 김동근, 김지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회 현안청취
9	국교위 지방대학 발전방안 전문가 토론회	2024.9.10.	김정구 상임회장	토론참석
10	부산권 국교련 교수회장단 부산시장 면담	2024.8.14.	김정구, 정석호, 강은숙, 김지현	사립대 대표7명 참석
11	故 고현철교수 9주기 추도식 참석	2-24 8.16.	국교련 회원교	
12	국회 제22대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간담회	2024.9.25.	김정구, 변지원, 안성 환, 장재순, 김지현	
13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토론회	2024.10.4.	김정구 상임회장	토론참석
14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24.10.21.	김정구 상임회장	토론참석
15	현장답사 : 제주 한라생태숲 탐방	2024.11.23.	김정구 상임회장 외 회원교 회(의)장단	
16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부산지역 토론회	2024.11.29.	김정구, 김지현	토론참석

업무보고 2.

회원교 연회비 납부 현황

○ 회원교 연회비 납부현황

(2024. 12. 31. 기준)

연번	회원교	분담액	납부액	미납액	비고
1	서울대학교	7,600,000	7,600,000	0	
2	부산대학교	6,950,000	6,950,000	0	
3	전남대학교	4,950,000	4,950,000	0	
4	경북대학교	4,950,000		4,950,000	탈회
5	전북대학교	5,950,000	5,950,000	0	
6	강원대학교	4,070,000	4,070,000	0	
7	충남대학교	5,070,000	4,070,000	1,000,000	특별회비 미납
8	경상국립대학교	4,070,000	4,070,000	0	
9	충북대학교	4,070,000	4,070,000	0	
10	제주대학교	5,070,000	4,070,000	1,000,000	특별회비 면제 (8차 회의 지원)
11	국립부경대학교	4,070,000	4,070,000	0	
12	국립공주대학교	4,070,000	4,070,000	0	
13	인천대학교	2,970,000	2,970,000	0	
14	서울시립대학교	2,970,000	2,970,000	0	
15	국립강릉원주대학교	2,970,000	2,970,000	0	
1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70,000	2,970,000	0	
17	국립군산대학교	2,970,000	2,970,000	0	
18	국립창원대학교	2,970,000	2,970,000	0	
19	국립순천대학교	2,970,000	2,970,000	0	
2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970,000	2,970,000	0	
21	국립목포대학교	2,970,000	2,970,000	0	
22	국립안동대학교	2,970,000	2,970,000	0	
23	국립한국해양대학교	3,970,000	3,970,000	0	
24	국립한밭대학교	2,970,000	2,970,000	0	
25	국립금오공과대학교	3,090,000	3,090,000	0	
26	한국교원대학교	2,090,000	2,090,000	0	
27	한경국립대학교	3,090,000	3,090,000	0	
2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90,000	2,090,000	0	
29	국립목포해양대학교	2,090,000	2,090,000	0	
30	한국체육대학교	2,090,000	836,000	1,254,000	교수회비 미납
31	경인교육대학교	550,000	550,000	0	
32	서울교육대학교	550,000		550,000	교수회 미구성
33	대구교육대학교	550,000	550,000	0	
34	공주교육대학교	550,000		550,000	25. 1. 14. 자 납부
35	부산교육대학교	550,000	550,000	0	
36	광주교육대학교	550,000	550,000	0	
37	춘천교육대학교	1,050,000	1,050,000	0	
38	진주교육대학교	550,000	550,000	0	
39	청주교육대학교	550,000	550,000	0	
40	전주교육대학교	550,000	550,000	0	
합 계		118,070,000	108,766,000	9,304,000	

*결산 보고 기준일이 2024. 12. 31.인 관계로 2025. 1월 중 연회비 납부 현황 미반영

업무보고 3.	결산 보고
----------------	--------------

2024년도 국교련 결산 보고

(2024. 3. 1. ~ 2024. 12. 31.)

가. 세입 예산

(단위: 원)

구분		당초 예산액*	실제 세입액	차액 (실제-당초)
대학 회계	전년도 이월금	1,282,090	1,282,090	0
	전년도 이월금(이자)	0	3,500	3,500
	2024 연회비(대학회계)	43,428,000	50,608,000	7,180,000
대학회계 소계(A)		44,710,090	51,893,590	7,183,500
교수 회비	전년도 이월금	18,467,865	18,467,865	0
	2024 연회비(교수회비)	65,142,000	50,658,000	-14,484,000
	2024 연회비(특별회비)	0	7,500,000	7,500,000
	2024 이자(교수회비)	0	13,248	13,248
교수회비 소계(B)		83,609,865	76,639,113	-6,970,752
예산 총계(A+B)		128,319,955	128,532,703	212,748

*당초 예산액에 특별회비 미반영

나. 세출 예산

2024년도 교수회비 세출 예산

(단위: 원)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집행액	잔액
항	목				
사업비	대외협력비	300,000	0	0	0
	정책과제 연구추진비	8,000,000	3,074,000	3,074,000	0
	전국교수연대회의	2,000,000	1,600,000	1,600,000	0
	故고현철 교수 기념사업회	3,600,000	3,600,000	3,600,000	0
운영비	운영수당	5,400,000	3,601,000	3,101,000	500,000
	공공요금	400,000	730,000	572,010	157,990
업무활동비	활동수당	24,000,000	24,003,000	20,003,000	4,000,000
	대외업무추진비	800,000	536,000	536,000	0
여비	여비	1,800,000	2,600,000	2,366,340	233,660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8,000,000	8,500,000	5,469,280	3,030,720
인쇄홍보비	인쇄비	300,000	561,000	561,000	0
	홍보비	1,000,000	176,000	176,000	0
일반관리비	잡비	42,000	10,000	8,660	1,340
인건비	인건비	27,600,000	27,601,000	23,001,000	4,600,000
기타	예비비	367,865	47,113	0	47,113
계		83,609,865	76,639,113	64,068,290	12,570,823

※ 교수회비 추후 집행 예정 (2025년 1월 ~ 2월)

제주기념품(업무추진비), 1~2월 활동수당, 1~2월 인건비, 선거비용(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2024년도 대학회계 세출 예산

(단위: 원)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집행액	잔액
목	세목				
운영비	일반수용비	10,128,000	10,128,000	3,819,700	6,308,300
	공공요금 및 제세	300,000	1,566,000	626,380	939,620
	일반용역비	5,800,000	8,800,000	0	8,800,000
여비	국내여비	2,000,000	3,700,000	2,416,950	1,283,050
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24,000,000	25,700,000	18,165,100	7,534,900
	관서업무추진비	1,200,000	2,000,000	465,000	1,535,000
기타	예비비	1,282,090	0	0	0
계		44,710,090	51,894,000*	25,493,130	26,400,870

*실제 예산은 51,893,590원이나, 대학회계 편성 시 천 원 미만 금액을 올림한 관계로 편성액은 410원이 더해진 51,894,000원으로 표기됨

※ 대학회계 추후 집행 예정 (2025년 1월 ~ 2월 대학회계 마감 전까지)

1월 회의자료 인쇄비(일반수용비), 백서 제작비(일반수용비), 백서 우편 발송(공공요금 및 제세) 등

다. 세출 상세 내역

2024년도 교수회비 세출 상세 내역

1. 정책과제 연구추진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4-08-14	교수회비	국립대학법 개정안 정책연구비	3,000,000
2024-10-10	교수회비	정책연구 회의비(박태현 정책위원장 및 연구원)	74,000
정책과제 연구추진비 계			3,074,000

2. 전국교수연대회의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4-08-09	교수회비	전국교수연대회의 분담금	1,600,000
전국교수연대회의 계			1,600,000

3.故고현철 교수 기념사업회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4-06-17	교수회비	사단법인 고고현철 교수 기념사업회 연회비	3,600,000
고고현철 교수 기념사업회 계			3,600,000

4. 운영수당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4-03-29	교수회비	제27대 국교련 출범식 축하 공연 수당 ※수수료 포함	301,000
2024-06-27	교수회비	정책 심포지엄 토론 수당(2인)	400,000
2024-06-27	교수회비	정책 심포지엄 발제 수당(4인)	1,600,000
2024-09-30	교수회비	국교련 정책세미나 발제비	400,000
2024-10-29	교수회비	국교련 정책간담회 발제비	400,000
운영수당 계			3,101,000

5. 공공요금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원)
2024-04-02	교수회비	이전 국교련 자료 인수(화물택배)	147,290
2024-05-21	교수회비	홈페이지 관리비(3월,4월,5월)	90,000
2024-07-22	교수회비	홈페이지 관리비(6월)	30,000
2024-07-22	교수회비	홈페이지 관리비(7월)	30,000
2024-08-21	교수회비	국교련 도메인 연장 대금	23,100
2024-10-08	교수회비	국교련 홈페이지 관리비(8월,9월,10월)	90,000
2024-10-15	교수회비	국교련 근조기 보관 연장 대금	33,000
2024-11-19	교수회비	국교련 8차 회의 명패 배송비	5,000
2024-11-28	교수회비	8차 회의 방명록 제주대 등기 발송 비용	3,620
2024-12-11	교수회비	국교련 홈페이지 관리비(11월,12월,1월,2월)	120,000
공공요금 계			572,010

6. 활동수당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2024-03-29	교수회비	상임회장·사무총장·정책위원장 활동비(3월) ※수수료 포함	2,003,000
2024-04-22	교수회비	상임회장·사무총장·정책위원장 활동비(4월)	2,000,000
2024-05-21	교수회비	상임회장·사무총장·정책위원장 활동비(5월)	2,000,000
2024-06-20	교수회비	상임회장·사무총장·정책위원장 활동비(6월)	2,000,000
2024-07-22	교수회비	상임회장·사무총장·정책위원장 활동비(7월)	2,000,000
2024-08-19	교수회비	상임회장·사무총장·정책위원장 활동비(8월)	2,000,000
2024-09-20	교수회비	상임회장·사무총장·정책위원장 활동비(9월)	2,000,000
2024-10-18	교수회비	상임회장·사무총장·정책위원장 활동비(10월)	2,000,000
2024-11-20	교수회비	상임회장·사무총장·정책위원장 활동비(11월)	2,000,000
2024-12-20	교수회비	상임회장·사무총장·정책위원장 활동비(12월)	2,000,000
활동수당 계			20,003,000

7. 대외업무추진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2024-03-13	교수회비	제26대, 제27대 국교련 사무국 인수인계 간담회	144,000
2024-09-26	교수회비	국교련 국회 간담회	392,000
대외업무추진비 계			536,000

8. 여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2024-04-02	교수회비	제27대 국교련 출범식 외빈 교통비 및 거마비(4인)	508,800
2024-04-22	교수회비	전국교수연대회의 출장(유진상 고문)	53,700
2024-06-07	교수회비	4차 회의 출장(KTX) (상임회장, 사무총장)	151,600
2024-06-21	교수회비	4차 회의 출장(택시) (상임회장, 사무총장)	11,700
2024-06-21	교수회비	4차 회의 출장(식대) (상임회장, 사무총장)	54,000
2024-06-27	교수회비	3차 회의 출장(전문위원)	50,000
2024-07-22	교수회비	4차 회의 출장(전문위원)	182,100
2024-08-01	교수회비	전국교수연대회의 출장(유진상 고문)	122,700
2024-09-09	교수회비	전국교수연대회의 출장(유진상 고문)	135,200
2024-09-26	교수회비	선진적 고등교육 국가전략 토론회 출장(유진상 고문)	138,100
2024-09-26	교수회비	국회 간담회 출장(상임회장)	46,140
2024-09-30	교수회비	국교련 정책세미나 발제자 교통비	106,100
2024-09-30	교수회비	6차 회의 출장(전문위원)	20,000
2024-10-08	교수회비	6차 회의 출장(박태현 정책위원장)	141,600
2024-10-29	교수회비	7차 회의 출장(전문위원)	102,800
2024-11-28	교수회비	8차 회의 출장(전문위원)	251,400
2024-12-03	교수회비	제2차 심포지엄 발제자 출장	290,400
여비 계			2,366,340

9.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2024-03-22	교수회비	1차 회의 행사비(코사지)	36,000
2024-03-22	교수회비	1차 회의 행사비(다과)	364,000
2024-03-22	교수회비	1차 회의 만찬비(2차)	273,000
2024-03-23	교수회비	1차 회의 행사비(숙박 및 조식)_국교련 결제	412,000
2024-04-02	교수회비	1차 회의 행사비(숙박비)_개별 결제 정산	903,000
2024-04-26	교수회비	2차 회의 만찬비(1차)	1,053,000
2024-04-26	교수회비	2차 회의 만찬비(2차)	240,000
2024-05-24	교수회비	3차 회의 만찬비(2차)	464,000

2024-09-30	교수회비	6차 회의 만찬비	238,800
2024-10-22	교수회비	7차 회의 다과비	34,500
2024-10-25	교수회비	7차 회의 점심 식사비	35,700
2024-10-25	교수회비	7차 회의 회의실 대관료	89,400
2024-10-29	교수회비	7차 회의 다과비	71,080
2024-10-31	교수회비	7차 회의 회식비	306,000
2024-11-21	교수회비	8차 회의 점심 식사비	51,300
2024-11-22	교수회비	8차 회의 회식비	214,000
2024-11-23	교수회비	8차 회의 둘째날 점심 식사비	116,000
2024-11-23	교수회비	8차 회의 둘째날 다과비	77,500
2024-12-03	교수회비	전국교수연대회의 회식비	490,000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계			5,469,280

10. 인쇄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2024-03-29	교수회비	제26대 상임회장 감사패 제작	70,000
2024-04-05	교수회비	1차 회의자료 인쇄	375,000
2024-04-23	교수회비	명함제작(상임회장,사무총장)	52,000
2024-08-02	교수회비	4차 회의자료 추가 인쇄	64,000
인쇄비 계			561,000

11. 홍보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2024-08-21	교수회비	3차 회의 현수막	66,000
2024-10-22	교수회비	6차 회의 현수막	66,000
2024-10-29	교수회비	7차 회의 현수막	44,000
홍보비 계			176,000

12. 잡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2024-06-23	교수회비	결산법인세	1,370
2024-06-23	교수회비	결산지방세	130
2024-10-08	교수회비	국교련 공인인증서 갱신 수수료	4,400
2024-12-29	교수회비	결산법인세	2,510
2024-12-29	교수회비	결산지방세	250
잡비 계			8,660

13. 인건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2024-03-29	교수회비	전문위원, 행정간사 인건비(3월) ※수수료 포함	2,301,000
2024-04-22	교수회비	전문위원, 행정간사 인건비(4월)	2,300,000
2024-05-21	교수회비	전문위원, 행정간사 인건비(5월)	2,300,000
2024-06-20	교수회비	전문위원, 행정간사 인건비(6월)	2,300,000
2024-07-22	교수회비	전문위원, 행정간사 인건비(7월)	2,300,000
2024-08-19	교수회비	전문위원, 행정간사 인건비(8월)	2,300,000
2024-09-20	교수회비	전문위원, 행정간사 인건비(9월)	2,300,000
2024-10-18	교수회비	전문위원, 행정간사 인건비(10월)	2,300,000
2024-11-20	교수회비	전문위원, 행정간사 인건비(11월)	2,300,000
2024-12-20	교수회비	전문위원, 행정간사 인건비(12월)	2,300,000
인건비 계			23,001,000

2024년도 대학회계 세출 상세 내역

1. 일반수용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2024-04-25	대학회계	2차 회의 현수막 제작	44,000
2024-04-26	대학회계	국교련 상임회장실 실명 사인물 제작 시공	84,700
2024-04-26	대학회계	2차 회의자료 책자 인쇄	330,000
2024-04-26	대학회계	2차 회의 문구류 구입	96,000
2024-05-24	대학회계	3차 회의자료 책자 인쇄	370,000
2024-06-20	대학회계	4차 회의 및 심포지엄 현수막 제작	132,000
2024-06-20	대학회계	4차 회의 및 심포지엄 자료 책자 인쇄	1,210,000
2024-08-14	대학회계	5차 회의 현수막 제작	44,000
2024-08-14	대학회계	5차 회의자료 책자 인쇄	350,000
2024-09-27	대학회계	6차 회의자료 책자 인쇄	375,000
2024-10-23	대학회계	7차 회의자료 책자 인쇄	390,000
2024-11-29	대학회계	전국교수연대회의 부산지역 토론회 현수막 제작	44,000
2024-11-29	대학회계	전국교수연대회의 부산지역 토론회 자료 인쇄	350,000
일반수용비 계			3,819,700

2. 공공요금 및 제세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2024-05-10	대학회계	2차 회의자료 책자 우편발송	105,240
2024-06-26	대학회계	3·4차 회의자료 및 심포지엄 책자 우편발송	113,600
2024-08-21	대학회계	5차 회의자료 책자 우편발송	76,820
2024-10-02	대학회계	6차 회의자료 책자 우편발송	112,840
2024-10-29	대학회계	7차 회의자료 책자 우편발송	97,060
2024-11-28	대학회계	8차 회의자료 및 제2차 심포지엄 책자 우편발송	120,820
공공요금 및 제세 계			626,380

3. 국내여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2024-05-24	대학회계	3차 회의 출장여비(5/24-25, 사무총장)	74,000
2024-05-24	대학회계	3차 회의 출장여비(5/24-25, 상임회장)	50,000
2024-06-22	대학회계	4차 회의 및 심포지엄 출장여비(6/21-22, 사무총장)	109,800
2024-06-22	대학회계	4차 회의 및 심포지엄 출장여비(6/21-22, 상임회장)	133,700
2024-07-05	대학회계	국교련 및 거국련 합동회의 및 세미나 출장여비(7/5-7, 사무총장)	397,800
2024-09-10	대학회계	국가교육위원회 포럼 참석 출장여비(9/10, 상임회장)	208,560
2024-09-25	대학회계	국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출장여비(9/25, 상임회장, 사무총장)	355,360
2024-09-27	대학회계	제6차 회의 출장여비(9/27-28, 상임회장, 사무총장)	80,000
2024-10-04	대학회계	전국교수연대회의 출장여비(10/4, 상임회장)	71,300
2024-10-21	대학회계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 참석 출장여비(10/21, 상임회장)	176,430
2024-10-25	대학회계	7차 회의 출장여비(10/25-26, 상임회장, 사무총장)	208,400
2024-10-26	대학회계	민주연구원 '고등교육 개선방안 간담회' 출장여비(10/26, 상임회장)	83,700
2024-11-22	대학회계	8차 회의 출장여비(11/22-23, 상임회장, 사무총장)	467,900
국내여비 계			2,416,950

4.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2024-04-26	대학회계	2차 회의 숙박비	900,000
2024-04-26	대학회계	2차 회의 만찬 간담회	480,000
2024-04-27	대학회계	2차 회의 조찬 간담회	220,000
2024-04-27	대학회계	2차 회의 오찬 간담회	261,000
2024-05-25	대학회계	3차 회의 숙박비	1,852,000
2024-06-21	대학회계	4차 회의 및 심포지엄 행사비	4,748,000
2024-08-14	대학회계	5차 회의 다과비	149,180
2024-08-16	대학회계	5차 회의 숙박비	1,210,000
2024-08-16	대학회계	5차 회의 만찬 간담회	201,000
2024-08-17	대학회계	5차 회의 조찬 간담회	101,000
2024-09-27	대학회계	6차 회의 숙박비	1,375,000
2024-09-28	대학회계	6차 회의 조찬 간담회	135,000

2024-10-25	대학회계	7차 회의 숙박비	1,411,000
2024-11-23	대학회계	8차 회의 및 제2차 심포지엄 행사비	4,544,000
2024-11-28	대학회계	전국교수연대회의 부산지역 토론회 행사 다과비	97,920
2024-11-29	대학회계	전국교수연대회의 부산지역 토론회 만찬 간담회	480,000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계			18,165,100

5. 관서업무추진비

지출일자	항목	지출내역	지출액
2024-08-01	대학회계	전문위원 인수인계 업무협의 간담회	150,000
2024-08-02	대학회계	故고현철교수 추도식 업무협의 간담회	180,000
2024-10-22	대학회계	7차 회의 및 정책간담회 행사 업무협의 간담회	135,000
관서업무추진비 계			465,000

라. 감사결과보고서



감사보고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귀하

본 감사인들은 국교련 회칙에 의거
2024. 3. 1. ~ 2024. 12. 31. 까지의 결산에 대하여
지출 내역 및 영수증을 중심으로 회계 부분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국교련에 대한 분담금(교수회비, 대학회계)에 맞게
지출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감사 민 병 익 
감사 안 성 환 

Ⅲ. 제27대 국교련 제8차 전체회장단 회의록 보고

제27대 국교련 제8차 회의 : 전체회장단회의

1. 제8차 회의 : 전체회장단회의 개요

- 일 시 : 2024년 11월 22일(금) 14:00
- 장 소 : 라마다제주시티호텔 그랜드 볼룸
- 성원보고 : 국교련 회원교 38개교 중 30개교(약 80%) ※ 미활동 회원교 제외
- 참석교 명단

연번	회원교 회(의)장/국교련 상임위원	직책	참석자	비고
1	부산대학교 교수회 (국교련)	회장(상임회장)	김정구	
2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우흥명	
3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이대현	
4	국립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조혜영	
5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회장	장진호	
6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정석호	
7	국립안동대학교 교수회	회장	안태창	
8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	회장	정제순	
9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회장	강은숙	
10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임정묵	
11	인천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정준	
12	전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재관	
13	전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동근	
14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송지환	
15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양창용	
16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	회장	배성제	
17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최인호	
18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종진	
19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회	회장	공홍식	
20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교수평의회	회장	이용기	
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회	회장	변지원	
22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안성환	
23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조혜영	위임
24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철호	위임
25	국립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정석원	위임
26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준우	위임
27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주현준	위임
28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	회장	임남균	위임
2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회장	김원필	위임
30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최수남	위임

2. 제8차 회의 : 전체회장단회의 결과 보고

1) 제2차 정책 심포지움

- 일 시 : 2024년 11월 22일(금) 16:00~18:00
- 장 소 : 라마다제주시티호텔 그랜드 볼룸
- 공동주최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주대학교

- 식 순 -	
16:00~16:10	개 회. 김정구(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축사1.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축사2. 정대화 상임위원(국가교육위원회)
16:10~16:20	기조강연. 김대식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16:20~18:00	<발제 및 토론> ▶발제1. “국립대학법 연구” 윤수정(강원대 교수)·박종원(부경대 교수) ▶토론1. 최인호(충남대 교수회장) 김대경(제주대 교수) ▶발제2. “고등교육법 전면개정안 연구” 박태현(강원대 교수, 국교련 정책위원장) ▶토론2. 김민서(교육부 규제혁신추진단 사무관) 김동근(전북대 교수회장)
18:00~	기념사진 촬영 및 만찬

○ 발제1. 국립대학법 연구

- 발표자1 : 윤수정 강원대 교수 (국립대학의 설립·조직 및 운영)

<p>(가) 총장의 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총장의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를 조화시키고자 함. -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국립대학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고려한다면, 유사한 내용(혹은 동일한 내용)을 담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준용 규정이 아닌, 독립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됨.
<p>(나) 국립대학발전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의 경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대학만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국립대학과 정부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립대학의 발전이 저해(沮害)되어 왔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견 전달을 통한 대학행정이 이루어져 헌법상의 대학의 자율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제도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고자 함. 즉 정부와 국립대학발전위원회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대학자율과 국가지원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국립

대학발전위원회의 목적이 있음.

-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는 것이 위임입법과의 관계 및 직제상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국립대학 구성원과 자치조직

- 대학의 자치의 주체는 1차적으로 대학이며, 대학의 장 기타 행정조직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학문연구와 교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함. 따라서 교수단체 내지는 교수회 역시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로 인정되므로, 국립대학의 또는 각 국립대학 학문단위마다의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
- 대학의 자치와 대학 운영에의 참여는 별개로 보며 모든 구성원에게 자치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성원들의 자치에 관한 권리 대신 구성원들의 참여권으로 변경하도록 함.
- 교수들의 자치기구인 교수회의 법적 지위가 국립대학법(안)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라) 대학평의원회

-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 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함.
- 대학평의원회를 각 국립대학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구성을 둘러싸고 구성 단위 사이에 극단의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대학마다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되, 협치의 원칙을 개별 구성원집단 및 구성원집단 내부의 참여 종류와 범위는 구성원의 지위, 역할과 책임 및 사안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발표자2 : 박종원 국립부경대 교수 (국립대학 재정지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유기홍 의원안은 현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토대로 옮겨 오면서 제2,3,6항 등을 수정하고 있음.
- 제2항은 경비 지원방식의 변경은 국립대학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대학별로 그 특성에 따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총액만 기준으로 삼을 경우 국립대학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진다는 교육부 의견과 관련해서는, 제2항의 취지가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자율성을 열어둔다는 것이고, 각 대학별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은 제3항과 제4항에서 각 대학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 판단되는바, 유기홍 의원안의 제2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구만 수정하는 방안을 제1안으로 제안함.
- 제6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이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따라서 입법전략적으로는 우선 원안과 같이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유지하되, 향후 논의 여하에 따라 “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양보할 여지를 열어둘 필요 있음.

(나) 국립대학재정심의위원회

- 유기홍 의원안은 국립대학재정지원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재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한편, 유기홍 의원안 제14조에서는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 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각 국립대학의 총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각 국립대학의 수요가 더욱 충실히 고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 위원회의 신설을 지양하는 입법현실에서 같은 법 내에 둘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0조의 국립대학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는 삭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 유기홍 의원안은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임. 다만, 그와 관련하여, 교육·연구비를 포함한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와 수당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국립대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교육·연구비는 그 실질이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종래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요구되었던 각종 행정업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보수에 편입됨으로써 공무원연금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됨.

○ 발제 2.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연구

- 발표자 : 박태현 강원대 교수/국교련 정책위원장

(가) 대학의 자율성 보장 강화

-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대학이 구현하려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가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대학평가 도구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정부가 활용하면서 평가기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돼 평가기관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 지적.

(나) 대학의 역할·책무와 국가 등의 지원

- 대학은 교육·연구 환경의 조성에다 학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진로·취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반면에 국가의 실험실습비 등의 지급에 관한 제8조4) 및 제8조의25)는 삭제하고,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제1항의 따른 역할을 수행하거나, 학교가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학교 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함: 학교의 학생지원에 관한 책무와 국가의 학교지원에 관한 의무는 상호 연계되어야 함.

(다) 고등교육 재정

- 대학의 역할과 책무가 강화되었음에도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등은 현행 유지.
-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배분 현황) 정부 총지출 및 교육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대비 2021년에 감소.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년~2029년) 수립에 앞서,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전략적인 재정투자 및 재정배분 방향의 정립이 요구됨.

(라)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 (행·재정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단지 “할 수 있다”
- (거버넌스)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할지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함.

(마) 제안

- 목적 조항 수정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며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학교의 경

	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의 혁신창출과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고등교육 당사자들의 기본적 역할(책무) 정립(조항 신설)

개정안	수정안
<p><신 설></p>	<p>제00조(고등교육 당사자의 기본 역할) 고등교육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는 다음 각 호에 원칙에 각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p> <p>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이 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p> <p>2. 국가는 국가경쟁력과 혁신의 기반인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p> <p>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4. 학교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수요와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및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p>

-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

개정안	수정안
<p>제11조의2(평가 등)</p> <p>① (생략)</p> <p>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 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11조의2(평가 등)</p> <p>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활용은 학교의 자율성을 간섭 또는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p> <p>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평가 또는 인증 업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신 설></p> <p>⑥(개정안 제5항과 같음)</p>

- 학생지원

개정안	수정안
<p>제14조(학생에 대한 지원) ① 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진로·취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제1항의 따른 역할을 수행하거나, 학교가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학교 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4조(학생에 대한 지원)</p> <p>①(개정안과 같음)</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제1항의 따른 역할을 수행하거나, 학교가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학교 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 고등교육의 재정

개정안	수정안
<p>제7조(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제3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제7조(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제3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p>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개정안	수정안
<p>제73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①(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u>할 수 있다</u>.</p>	<p>제73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①(개정안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u>하여야 한다</u>.</p>
<p>제74조(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등) ① 제73조에 따른 지원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광역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교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③(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p>	<p>제74조(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등)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방법과 권한기능 조항을 마련하여야 함</p>
<p>제75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③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제73조에 따른 지원과 제78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p>	<p>제75조(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③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제73조에 따른 지원과 제78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단서 부분 삭제></p>

- 통합국립대학 위원회 지위

개정안	수정안
<p>제5조(통합국립대학의 운영) ③ 통합국립대학에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둔다.</p>	<p>제5조(통합국립대학의 운영) ③ 통합국립대학에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을 <u>자문</u>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둔다. <u>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대학평의위원회와 협의</u>를 하여야 한다.</p>

- 대학평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정안	수정안
<p>< 제29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중 >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p>	<p><제29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중 > 1.~ 5. (개정안과 같음) 6.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주요사항 7.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8. 직원 및 조교의 인사, 보수, 고충 처리 등의 관련 규정 제·개정 9. (개정안 제6호와 같음)</p>

2)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교련의 입장

- 대교협 등의 입장과 같이 전부개정안에 찬성하지만, 일부 독소 조항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의견 제출이 필요함.

3)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선거관리 위원장 선출

- 선거관리 위원장 : 정석호(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장)
- 선거 방식 : 모바일 투표(정기총회 불참자 투표 가능)

4) 기타 안건

○ 등록금 인상

- (장진호):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장학금 유형 I 의 역차별과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국교련의 의견 검토와 입장표명이 필요함.
- (안성환): 등록금 인상시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교육부 정책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장진호): 3년 물가 상승률의 1.5배만큼은 인상하더라도 행·재정적 제재는 할 수 없음. 단, 국가장학금 유형 II 는 수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등록금 인상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
- (박정준): 등록금 인상은 교수 임금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 국교련과 국교조의 대응 상황이 궁금함,
- (김정구):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음.
- (김정구): 장진호 회장께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에 대한 기획과제 제안.

○ 무전공에 대한 국교련 입장 필요

- (김정구): 국립대육성사업의 평가 기준이 무전공 비율로 정해진 결과는 전형적인 교육부의 간섭임. 이에 대해서 국교련의 입장표명이 필요함.
- (김동근): 전북대는 무전공 비율이 80% 이상으로 선발하여, 많은 문제가 예상됨.
- (임정묵): 서울대 자율전공학부는 주전공 없이 졸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됨. 전공을 결정하고 입학한 학생에게는 불리한 제도여서 ‘학부대학’ 추진하고 있음.
- (김재관): 무전공제 도입으로 기초학문이 취약해지고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립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교육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 (김정구): 대학의 서열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무전공제 도입은 문제를 악화함. 제1차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무전공제 문제점을 종합하여 교육부에 전달하고자 함.

○ 워크숍 개최 제안

- (양창용): 워크숍 개최 요구.

1년 동안 국교련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함. 국교련 내 분과를 만들어 관련 사안을 검토, 토론, 제안하면 좋을 듯함.

- (김정구): 2월경, 신임 상임회장님을 초청하여 워크숍 개최를 검토하겠음.

5) 활동사진

○ 제8차 전체회장단 회의



○ 제2차 정책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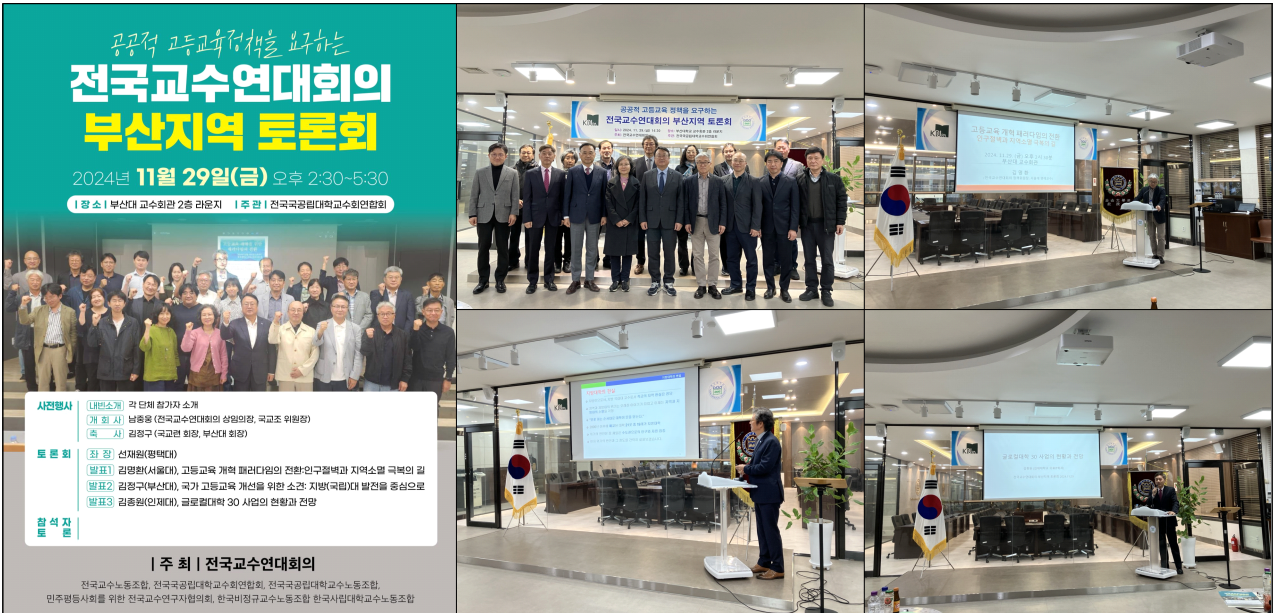
Ⅳ. 활동 보고

활동보고 1. 전국교수연대회의 부산지역 토론회 개최

1. 개요

-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 장 소 :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 라운지
- 참 석 자 : 김정구 상임회장, 김지현 사무총장

○ 활동사진



활동보고 2.

제26대 국교련 유진상 상임회장 감사패 증정

○ 제26대 국교련 유진상 상임회장 감사패 증정

- 일 시 : 2024년 11월 29일
- 장 소 :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 라운지
- 참석자 : 김정구 상임회장, 김지현 사무총장



활동보고 3.	비상계엄령 시국 성명서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	----------------------------------

○ 12.3. 비상계엄령에 대한 국교련 시국 성명서(보도자료)

국민과 대학을 위한 평교수 지적공동체		<h1 style="font-size: 2em;">보도자료</h1>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small>Korea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s</small>	
			상임 회장	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
연락처	010-5093-3733			
이메일	newknupa@naver.com			
배포시기	2024.12.04.(수)			
보도시기	배포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자 중대한 범죄행위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촉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시국 성명서 발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12월4일 17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국교련은 불법적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려 주권자인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교육자로서 정의로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땅의 모든 교육자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그리고 공립대학 총 40개교의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 사안에 대해 대학 평교수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교육전문가의 식견과 민의를 반영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시국 성명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려 주권자인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자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그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and 처벌을 촉구한다.

국교련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치주의를 교육적 차원에서 성찰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학계의 중요한 책무이다. 국교련은 민주주의 가치를 거스르는 행위가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국가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것이다.

국교련은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학문의 전당이자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서 이번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결연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24. 12. 4.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원대학교 교수회장 우홍명	국립안동대학교 교수회장 안태창	전북대학교 교수회장 김동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장 민병익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장 류병관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송지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김철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장 정제순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양창용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조혜영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장 강은숙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최수남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대현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회장 윤 린	청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강병직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장 최성범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주현준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장 배성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장 박지훈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광현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최인호
국립군산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조혜영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김원필	충북대학교 교수회장 박종진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장 장진호	서울대학교 교수회장 임정묵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회장 공홍식
국립북포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정석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장 김선형	한국고원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용기
국립북포해양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임남균	인천대학교 교수회장 박정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인교수협의회장 변지원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장 정석호	전남대학교 교수회장 김제관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안성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부산대학교 교수회장 김성구

이 땅의 모든 교육자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음을 전합니다.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2.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25
----------	------

발의연월일 : 2024. 12. 5.

발 의 자 : 정을호 · 이기현 · 김남근
오세희 · 추미애 · 백승아
조승래 · 김준혁 · 김동아
차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개별 대학의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학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2분의 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년으로”를 “1년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⑤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한다.

1. 정기회: 학기당 1회

2. 임시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의원 전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의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p><신 설></p>	<p>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그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⑦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평의원 전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⑧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의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신 설></p>	<p>⑨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및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⑩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신 설></p>	<p>⑪ 회의는 원격영상회의(평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p>
<p>⑤ ~ ⑦ (생략)</p>	<p>⑫ ~ ⑭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 법률검토 및 의견서 작성 : 박태현 국교련 정책위원장

<p style="text-align: center;">「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제19조의2 제2항)에 대한 반대 의견서 -대학평의원회 구성비율에 관한 현행「고등교육법」제19조의2 제2항은 유지되어야 한다!!!-</p> <p>1. 2024. 12. 5. ‘대학원평의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현행 규정을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로 “개별 대학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내세웠다.</p> <p>2. 대학의 구성단위는 크게 교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 등 3주체로 이뤄진다. “전체 평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결국 3구성단위가 기본적으로 동등한 비율로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학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이는 대학에 민주주의 원칙을 형식적·기계적으로 관철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서 고등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규범적 시각에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아</p>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교육부 회신(12. 26)

○ 대학평의원회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한 검토 하겠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교육부 검토결과
	수정안	수정 사유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u>3분의 1</u>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분의 1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 12. 5. ‘대학원평의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현행 규정을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로 “개별 대학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내세웠다. 대학의 구성단위는 크게 교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 등 3주체로 이뤄진다. “전체 평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결국 3구성단위가 기본적으로 동등한 비율로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학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이는 대학에 민주주의 원칙을 형식적·기계적으로 관철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서 고등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규범적 시각에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능적 조직체다. 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산학협력(産學研協力)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학생들을 위한 장학·복지·진로·취업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기능적 조직체로서 대학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회적으로 부여된 기능과 책무를 능률적으로 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합한가 하는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주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대학, 대학원, 학부(학과) 또는 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 및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연구 환경의 조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들이 교원에 의하여 전적으로 다뤄져서는 아니 되지만, 교원의 교육적 식견과 경험, 전문적 통찰 등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함은 분명하다. 이것이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의하여 보장되는 내용이다.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에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의 식견과 경험, 또 교육의 이해당사자로서 학생의 시각과 필요 등이 적절히 합쳐짐으로써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능률성과 합리성, 그리고 민주성이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서의 ‘학내 민주주의’는 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학문의 자유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것과 조화하는 방식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현행 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서 어느 특정 구성단위(주로교원)가 결정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내 민주적 원리를 고려하면서도, 개별 학교가 능률적으로 구성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이 고등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 학내 민주성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은 유지되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한 검토 하겠음

활동보고 5.

신임 회(의)장단 소개

1. 신임 회(의)장단 구성 회원교 소개

○ 국립순천대학교 교수회 의장 손영진

임기 : 2024. 12. 12. ~ 2026. 12. 11.

○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용민

임기 : 2025. 1. 1. ~ 2027. 12. 31.

1. 라이즈, 글로벌 관련 동향 기사

○ 글로벌대학·라이즈, 원활히 추진? 대학은 '답답'

－ 출처 : 교수신문(11. 25)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727>

교육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같은 기조를 이어나갈 뜻을 내비쳤다.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대표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등교육계에서는 해당 정책들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반발한다.

과제	그간의 성과	향후 추진계획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R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이즈 예산안 편성(총 2조 10억원) 7개 라이즈 시범지역 운영(23~24) 17개 시도 전담부서 정비 및 라이즈 센터 지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 라이즈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라이즈 지원전략' 확장(24.12) 지자체: 지역별 5개년 계획 본격 시행 교육부: 관계법령 개정 추진 17개 시도별 '라이즈 5개년 계획' 확정 및 국고 지원액 대비 20% 이상 지방비 매칭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대학 1차 10개, 2차 10개 지정 혁신동행형 규제개혁 추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4.2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대학 제안 기반 규제특례 적용(계속) 제도개선-규제개혁 이행 방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대학에 적용 가능한 과제 → 법령-지침 개정 통해 일괄 개선(전체 적용) 글로벌대학 적용 후 확산 과제 → 규제특례 등 성과분석 후 법령-지침 개정(특례 적용)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이행 협약(24.12)

글로벌대학 예산 지급 시기 늦어...라이즈 지자체 주도 우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교육개혁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 뒤 올해 그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해 고등교육계는 동의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를 두고 예산 지원 시기가 너무 늦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전북대 등 글로벌대학 10곳을 선정된 뒤 1차 연도 예산 50억 원을 지원했다. 사업 기간이 다음 해 2월까지로 짧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차 연도 예산 100억 원도 지난 10월에야 지급됐다.

지난해 선정된 글로벌대학의 한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대학 예산 100억 원이 10월에 들어오다 보니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사업을 진행해야 해서 힘들다”며 “게다가 보통 사업 초기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글로벌대학의 경우 뒤로 갈수록 많은 돈을 지급하니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빠른 지난 8월에 글로벌대학이 지정됐다. 그러나 이들의 1차 연도 예산도 지난해 선정된 글로벌대학들의 2차 연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지난 10월에 지급됐다. 올해 지정된 글로벌대학 관계자들도 짧은 사업 기간에 불만을 내다 내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업 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지만 돈을 정산할 시간이 필요해 실제적으로는 1월까지 예산을 다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예산 집행 기간이 짧는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성과도 내야 하니 부담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정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글로벌대학 정책이 대학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게 대학에 진

정으로 이로온 일인지 잘 모르겠다”며 “오히려 모든 대학이 정부 의도에 따른 개혁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율전공제(무전공 제도)인데 이는 앞서 정부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다가 실패했음에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면서 “자율전공제 입학 비중을 높이는 대학에 가산점을 줘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에 따라오게끔 강제하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라이즈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자문위원장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라이즈 예산을 활용하고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라이즈의 시행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자체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글로벌대학 예산, 인센티브 형식이라 하반기 지급”

글로벌대학 정책과 관련한 대학의 불만에 교육부 관계자는 “글로벌대학 사업 예산의 경우 인센티브 형식이므로 하반기에 집행이 된다”며 “국립대는 국립대육성사업, 사립대는 지방대 활성화 사업이라는 모사업이 있어 해당 사업 예산이 연초에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진행을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초기 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1차와 2차 연도는 사업 초기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니 적은 규모의 예산을 세팅해 봤고, 실제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연도부터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혁신기획서의 규모에 맞춰 지원하려 한다”면서 “게다가 사실 50억 원과 100억 원도 단일 사업 예산 규모로만 봤을 때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올해 교육개혁 성과 현장에 뿌리내려…내년 라이즈 등 원활 추진”

정부의 교육개혁 가운데 고등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크게 라이즈와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라이즈는 그동안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학 행·재정 지원을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해 주도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정책이다. 라이즈가 구축되면 지자체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를 집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라이즈 시행 첫해인 내년에 총 2조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전에 대표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었던 RIS(지역혁신)·LINC(산학협력)·LiFE(평생교육)·HiVE(직업교육)·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합해 1조 2천25억 원을 조성했고,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8개 사업 예산 2천963억 원도 라이즈 예산으로 이관됐다.

라이즈 시행을 앞두고 전국 17개 지자체는 분산돼있는 대학 관련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합·재배치해 라이즈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 지역별 라이즈센터 지정 작업도 마무리한 상태다.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경우 지난해 울산대·전북대 등 10곳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도 경북대·국립목포대 등 10곳을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지역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갈 대학에 5년간 국고 1천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학이 단독 또는 대학 간 통합·연합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곳의 글로벌대학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오 차관은 “내년에 17개 시도에서 라이즈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과 실제 사업관리 예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지역 특화 산업 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벌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 기자 gjahwan90@kyosu.net

2. 대학 재정, 등록금 관련 기사

○ “국립대, 교육·연구 중심으로 개편…대학재정, 등록금 자율화부터“

- 출처 : 교수신문(11. 27)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036>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고등·평생교육 과제' 대토론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준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토론회에서 국립대는 교육·연구 중심으로 나누고, 사립대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3가지 유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대학체제 개편안이 나왔다. 아울러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교위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과제'를 주제로 제8차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교육 중심 국립대, 시험 없이 지역연고제 등으로 입학
연구 중심 국립대, 석·박사과정 학생 집중 양성 역할
사립대는 교육부 규제 벗어나 건학 이념 따라 차별화**

먼저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에서 우리나라 대학을 교육·연구 중심 국립대와 자율성을 가진 사립대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중심 국립대는 모든 학생이 시험 없이 지역연고제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학할 수 있고, 학사 교육을 책임진다. 석·박사과정 학생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역할은 연구 중심 국립대가 맡는다. 사립대의 경우 교육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각 대학의 건학 이념과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조 명예교수는 “한국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중과 순서 면에서 다른 선진국 대학들과 다른 전략을 가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의 유기적 통합을 이뤄야 우리나라가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규제 과도…대학 경쟁력, 수요자가 판단해야“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가 수요 변화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지적인 이점으로 인해 혁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소관 법령 중 고등교육 관련 법령과 규정이 200개를 넘는 등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가 대학의 혁신을 방해하고 비효율성도 초래해 우리 대학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여건이 더욱 취약해져 정부 의존도가 심화되는 부분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고 원장은 자생적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아닌 수요자가 대학의 경쟁력 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대학체제 개편에 직결되도록 제도·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립대 존립 이유와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과)는 우리나라 대학이 맞이할 환경 변화와 앞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의 판도가 바뀌면서 다양한 유사 고등교육 공급자들이 생겨 새로운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으로 국경 없는 학습 시대가 열려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특성화한 대학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공유 대학과 플랫폼 대학이 미래 대학의 모습”이라며 “열린 대학·학습 대학·공동체 대학·지속 가능한 대학·잘 가르치는 대학이 성공하는 대학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라이즈 예산 내역 내용에 글로벌대학 정확히 명시“

선정 대학에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 사업 예산도 내년부터는 라이즈 예산에서 활용된다. 지난해 전북대·포항공대·한림대 등 10곳에 이어 올해도 경북대·국립목포대·한동대 등 10곳이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대학혁신지원사업·국립대육성사업·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 예산의 인센티브로 글로벌대학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 예산을 정확히 배정하지 않고 다른 사업 예산을 편법으로 끌어모아 사용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의 경우 라이즈라는 내역사업 내용에 글로컬대학을 정확히 명시했다”며 “글로컬대학 선정 첫해에는 50억 원을 지원하는데 2년 차와 3년 차에 어느 정도 규모를 지원할지 결정돼 있지 않아 아직 글로컬대학 예산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열악한 재정 경쟁력 약화…등록금 자율화부터 시작해야”

지정 토론에서는 대학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교육학과)는 16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교육 재정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학교육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해 건전한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의 자율적 책정을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의 사고 전환, 고등교육 예산의 우선 배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충분한 재정 확보, 평가 인증 사립대에 대한 경상비 지원과 사립대 재정 지원의 이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국제정책대학원)도 대학의 열악한 재정·교육부의 과도한 통제·혁신 없이 안주하는 대학 등 3가지를 대학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대학 등록금 자율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등록금을 자율화하면 더 높은 등록금을 받고자 대학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며 “등록금 자율화로 인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 훼손 문제는 국가장학금 확대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자율화 정책, 수도권 대학에만 혜택 집중 예상 지방대 경쟁력 위해 국가장학금 지역별 차등 지원 필요

특히 박 교수는 등록금 자율화 정책의 혜택이 수도권 대학에만 집중될 수 있으므로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학을 소재지에 따라 3유형으로 분류해 수도권 대학에는 7분위까지, 충청·강원 등 중부권 대학에는 8분위까지, 영호남권 대학에는 9분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등록금 면제만으로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맞출 수 없으니 수도권은 2분위, 중부권은 3분위, 영호남권은 4분위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공영형 전문대·단과대' 도입 '직업교육법' 제정으로 직업·평생교육 법적 근거 마련

변기용 고려대 교수(교육학과)는 현재 우리나라가 4년제 일반대를 중심으로 고비용 저효율 고등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 맞게 저비용의 고등·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영형 전문대·단과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직업·평생교육 체제와 관련해서는 남기석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회장이 전문대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가칭 '직업교육법' 제정으로 직업·평생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직업·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역·산업 등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특화형 직업·평생교육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문대가 지역 내 평생학습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칭 '직업교육법' 제정을 추진해 직업·평생교육의 법적 근거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직업교육과 평생학습 간의 학점 상호인정 제도화 등 학습자의 경력과 학습 경험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체계 구축도 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 사립대 총장 48명 “2025년 등록금 인상 계획”

- 출처 : 교수신문(1.7.)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894>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90개 대학 총장 설문조사
 등록금 인상시 ‘우수 교수 유치’ ‘학생복지 지원’ 밝혀
 ‘라이즈·글로벌대학30’ 평가는 ‘그저 그렇다’…지자체 신뢰 낮아
 대학혁신 방안으로 93.4%가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 꼽아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 기념촬영 모습이다. 사진=사총협

전국 사립대 총장 48명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정책인 라이즈 체계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많아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변창훈, 이하 사총협)는 151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 151개 사립대 중 90개 대학 총장이 응답했다. 90개 대학 중 48곳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고, 38곳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결 계획’은 4곳이었고,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대학은 없었다.

대학 현안 1순위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꼽은 총장이 75.9%로 가장 많았고, 2순위는 ‘대학 관련 규제 개선’, 3순위로는 ‘대학 내 인프라 개선’이 뒤를 이었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 질문에는 사립대 총장의 53.3%가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42.2%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밝힌 대학은 4.4%에 불과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이후 17년째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이 불가인상 요인이고,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가장 중요한 ‘대학 현안’은

항목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① 대학 등록금 인상	사례수(명)	63	9	4	1
	구성비(%)	(75.9)	(11.0)	(4.8)	
② 대학 관련 규제 개선	사례수(명)	11	33	7	2
	구성비(%)	(13.3)	(37.8)	(8.4)	
③ 대학 내 교육인프라 개선	사례수(명)	5	17	17	3
	구성비(%)	(6.0)	(20.5)	(20.5)	
④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사례수(명)	3	7	22	5
	구성비(%)	(3.6)	(8.4)	(26.5)	
⑤ 산학연 협력 강화 및 협업 확대	사례수(명)	1	9	21	4
	구성비(%)	(1.2)	(10.9)	(25.3)	
⑥ 최신 실업실습 기자재 확충 및 개선	사례수(명)	0	5	8	6
	구성비(%)	(0.0)	(6.0)	(9.6)	
⑦ 타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시설 공유	사례수(명)	0	3	2	7
	구성비(%)	(0.0)	(3.6)	(2.4)	
합 계	사례수(명)	83	83	83	
	구성비(%)	(100)	(100)	(100)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

사총협 “국가장학금 증액 별 도움 안 돼…등록금 인상 불가피”

하지만 재정난을 버티지 못한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2022년에는 6개교, 2023년도는 17개교, 2024년도는 26개교가 대학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대학이 대학 등록금 인상 대열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강대와 국민대 등 일부 사립대는 국가장학금 II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첨단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가장학금 증액은 대학 재정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므로 정부

는 대학 혁신과 사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등록금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 역시 설문조사에서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은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6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97.8%가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을 꼽았고, ‘첨단 교육시설 개선’(97.7%), ‘우수 교직원 채용’(96.6%), ‘학생복지(기숙사, 학식, 보건) 개선’(94.5%) 순으로 답했다. 대부분 직접적인 교육 환경과

연관이 있어 대학의 등록금 동결이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시 활용계획’ 질문에는 1순위로 ‘우수 교수 유치 및 직원 채용’이라고 응답한 총장이 가장 많았으며, 2순위로는 ‘학생복지 지원시스템 및 시설 강화’, 3순

위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 개편 및 교육과정 개편’ 순으로 답했다.

사총협은 지난 16년간 소비자 물가 누적 인상률은 135.9% 증가했지만, 정부의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 등록금 수입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요 국가의 등록금 인상 추진 현황을 공개하며,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영국은 3.03%, 일본은 도쿄대 등 주요 대학이 최대 20%, 미국 대학도 평균 5.2%

이상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 이유에 대해 영국은 ‘대학의 재정위기 극복’, ‘미국 대학과의 경쟁을 위해’라고 밝혔으며, 일본은 ‘국제경쟁력 제고’, ‘교육 및 연구 비용 상승 대응’, ‘설비 노후화 등 교육환경

개선과 인건비 증가’가 원인이며,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대학운영 비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을 들었다.

대학혁신 방안, ‘해외 유학생 유치’ ‘산학협력 활성화’ 꼽아

‘대학혁신 방안’ 질문에는 ‘우수 해외유학생 유치’가 시급하다는 총장이 93.4%로 가장 많았으며,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수익사업 확대’가 85.6%로 나타났다. 뒤이어 ‘디지털 대전환

(DX)시대에 대비한 행정 및 학사 조직 개편(85.5%), ‘AI 활용을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84.4%)’이 꼽혔고, ‘학과 간, 전공 간 장벽 해소’와 ‘에듀테크(EduTech)에 기반한 교수-학

습법 개발’이 74.4%, ‘무전공제 도입 및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은 5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라이즈 체계’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42.3%가 ‘라이즈 체계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지자체의 대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45.5%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사총협은 대학과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지자체에 대한 대학의 우려와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글로벌대학’ 소외된 수도권·중소규모 지역대학 지원대책 요청

또한 ‘글로벌대학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수도권 소규모 대학과 지역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정책을 정부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 82.2%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해 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사업에서 소외된 수도권 및 중소규모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대학자율화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비롯한 고등교육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 현안에 대한 인식 △대학혁신 방안 △대학 등록금 관련 △정부 고등교육정책 4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

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각 진행됐다. 온라인은 60개교가, 오프라인은 30개교가 참여해 151개교 중 총 90개교가 설문

에 참여했다.

임효진 기자 editor@kyosu.net

3. 상임회장 신년사

○ [2025 신년사] 김정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대학의 본질은 창의성과 자율성…국교련, 대학 규제 최소화에 앞장설 것”

- 출처 : 한국대학신문(1.1.)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3084>



김정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부산대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고 암울했습니다. 권력자는 도량발호(跳梁跋扈)했고, 사회는 양극화되고, 대중의 뇌는 저품질 디지털 콘텐츠로 썩어갔습니다(brain rot). 그리고 미증유의 국가적 수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큰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어 내신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은 국가고등교육의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역대학의 중흥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지역대학의 발전입니다. 쇠락한 미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다시 살아난 것도, ‘말피의 눈물(Tears of Malmö)’로 유명한 스웨덴의 말피가 중흥한 것도 지역대학과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노력한 결과입니다.

대학의 본질은 창의와 자율입니다. 대학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의 자치와 자율에서 발전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대학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대학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교련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국가의 원리가 대학에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대학이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정립해 국가 교육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분명하고 꾸준한 목소리를 낸다면 격랑 속에서도 우리 사회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대학신문 독자와 대학 가족 여러분, 푸른 뱀의 영험한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축복 속에서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고 응원합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

1. [국교련27-064] 대학 교원의 복무규정에 관한 실태 조사 협조 요청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s

수 신 국교련 회원교

참 조

제 목 복무규정에 관한 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27대 국교련에서는 대학 교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복무규정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각 회원교의 적용기준을 12월20일까지 국교련 이메일(newknupa@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학교원

나. 현황 및 근거규정

구분	복무기준		근거규정
	직무 관련성 有	직무 관련성 無	
겸직허가 특한 외부강의			
기타 외부강의 (겸직허가외)			

다. 제출기한

- 12월20일, newknupa@naver.com

라. 참고사항

- 붙임. 참고자료

붙임. 참고자료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



전문위원 진우현

사무총장 김지현

상임회장 김정구

시행 국교련 27-064 (2024. 12. 11.)

주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63번길 2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

전화 051-510-1396

E-mail: newknupa@naver.com/ 공개

2. [국교련27-06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 교육부장관(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제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1.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검토. (제19조의2 제2항)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 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는 정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조의2 제2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고등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과 학내 민주성에 대한 균형을 위하여 현행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은 유지되어야 한다. (붙임 참조)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그리고 공립대학 총 40개교의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 사안에 대해 대학 평교수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으로 발표 함으로써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교육전문가의 식견과 민의를 반영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붙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출자 2024-12-17
진우현

시행 국교련27-065 (2024-12-17) 접수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63번길 2 (장전동) 교수회관2층 / <http://www.nupa.kr>

전화번호 051-510-1396 팩스번호 051-515-2236 / newknupa@naver.com / 비공개(6)

3. [국교련27-066] 제27대 국교련 제9차 회의 : 정기총회 참석 요청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s

수 신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제27대 국교련 제9차 회의 및 제2차 정기총회 참석 요청

1. 귀 대학 교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아래와 같이 국교련 제9차 회의이자 제27대 국교련 결산 및 제28대 상임회장 선거를 위한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전체 회원교 회(의)장 및 국교련 임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불임1과 같이 참석 여부를 1월 10일(금)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회원교는 불임2의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불임1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년 1월 24일 (금) 15시 ~ 1월 25일 (토)
- 장소 : 강원대학교

나. 주요일정

첫 째 날	15:00	정기총회 (제27대 국교련 결산보고 및 제28대 상임회장 선거)
	18:00	만찬
둘 째 날	09:00	국교련의 운영방향 간담회 및 지역탐방(미정)

※숙박호텔과 회의 장소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참석 및 숙박 여부

- 불임. 첨부한 서식을 작성하여 2025년 1월 10일(금) 17시까지 회신
- 회신 메일 : newknupa@naver.com
- 문의처 : 051-510-1396 (국교련 사무국)

불임1. 제27대 국교련 제9차 회의 참석여부(서식) 1부.

불임2. 위임장 1부.

불임3.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선출규정 및 환산표 1부.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전문위원 진우현

사무총장 김지현

상임회장 김정구

시행 국교련27-066 (2024. 12. 24.)

주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63번길 2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

전화 : 051-510-1396

E-mail : newknupa@naver.com/ 공개

4. [국교련27-069] 제27대 국교련 회원교 회비 미납분 납부 요청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제목 제27대 국교련 회원교 회비 미납분 납부 요청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27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회비 일부가 미납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납부를 요청 드립니다.

(단위: 원)

회원교명	2024년도 고지금액	1차 납부금액	미납금액	비고
한국체육대학교	2,090,000	836,000	1,254,000	

3. 납부 방법

가. 계좌 입금: 농협 301-0347-7380-21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나. 납부 기한: **2025. 1. 24.(금)** ※ 기한 엄수

붙임 제27대 국교련 통장 사본 1부,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문위원	기안 2025-01-02 한경운	사무총장	검토 2025-01-02 김지현	상임회장	결재 2025-01-02 김정구
시행	국교련27-069	(2025-01-02)	접수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 학로63번길 2 (장전동) 교수회관 2층				
전화번호	051-510-1396	팩스번호	051-515-2236	/ newknupa@naver.com	/ 비공개(6)

5. [국교련27-071] 제27대 국교련 제9차 회의 : 정기총회 참여 변경 공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s

수신 수신자 참조

참조

제목 제27대 국교련 제9차 회의 : 정기총회 참여 변경 공지

1. 귀 대학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국교련27-066
3. 위 호와 관련하여 제27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제9차 회의 :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비대면(Zoom) 회의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변경
일시	'25. 1. 24.(금) 15:00 ~ 1. 25.(토)	'25. 1. 24.(금) 15:00
장소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 회의실
방식	대면	비대면(Zoom) 회의 ID: 873 5736 7059 암호: 1396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전문위원 **현경운**

사무총장 **김지현**

상임회장 **김정구**

시행 국교련27-071 (2025. 1. 17.)

주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

전화 051-510-1396 팩스 051-515-2236 E-mail newknupa@naver.com / 공개

V. 논의사항

논의사항 1.

온라인 논의사항

1. 제28대 국교련 상임회장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정석호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장
- 위 원 : 공홍식 한경국립대 교수회장, 장진호 국중련 상임회장, 최인호 거국련 상임회장,
김지현 사무처장(당연직)

○ 투표일자

- 2025.1.24.

○ 투표방식

- 전자투표

○ 후보자

- 우홍명 강원대학교 교수회장

2. 대학 교원의 복무규정 관련(12.11.)

▶제안자 : 류병관 국립창원대 의장

○ 첨부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창의적 연구 · 교육으로 지역과 함께 세계를 향해 성장하는 대학</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창원대학교</p> <p>수신 교수회의장 (경유) 제목 교수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제출</p> <p>1. 관련 : 교수회-361(2024.11.25.)「지체 종합감사 추가 실시에 따른 질의사항 답변 요청」</p> <p>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계속성이 있는 겸직허가를 근무시간 내에 종사하는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하고,</p> <p>3.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 등'은 출장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국립창원대학교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 업무처리 지침」 제2조(정의)제2항</p> <p>※ 다만,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은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처리</p> <p>끝.</p> <p style="text-align: right;">국립창원대학교총장 직인생략</p>	<p>※ 국립창원대학교</p> <p>-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계속성이 있는 겸직허가를 근무시간 내에 종사하는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p> <p>- 3.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 수행 및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 등'은 출장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p>
---	---

○ 의견

- (류병관): 최근 대학에서 종합감사를 예고하고 교원의 복무 관련 지침을 송부하였기에 대학본부에 공문으로 질의를 하였음. 현재 대부분 국립대 교수님들께서 국가 기관, 관공서에 위원회 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 참여시 관내·외 출장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최근 교육부 공문에 근거하여 겸직허가를 받고, 위원회 참여시 외출, 연가, 조퇴를 신청하고 회의에 참석하라고 함. 국교련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대응책 마련을 요청함. 교육공무원의 복무는 일반 국가직 공무원과 다르다는 판례도 있음. 또한 교수는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각종 국가기관위원회 활동은 봉사점수로 인정되어 교연지 등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공적 활동을 사적 활동인 외출, 연가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봄.
- (김정구): 의장님께서 지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부에 질의 및 항의 공문을 보내겠음.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각 대학의 사례를 취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음. 대학 본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문 작성하여 회람하겠음.

○ 확인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233쪽)></p> <p>자. 외부강의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p> <p>(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p> <p><small>* 김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small></p> <p>(2)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p> <p><small>* (예)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small></p> <p>(3) 외부강의의 출장을 위하여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1>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함</p> <p>(4)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함</p> <p>(5) 각 기관에서는 <붙임 2> 서식의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p>	<p>※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233쪽)의 <u>“자. 외부강의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u></p> <p>창원국립대의 경우, 선(출장처리), 후(연가외출조퇴)를 뒤바꾸어 교수회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임.</p> <p>좌와 같이, <u>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회의)는 '출장처리'를 우선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회의)에 한하여 '연가,외출,조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u></p>
--	--

※참고 (공문회신)

- 대부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근거하여 운영
 ☞해당회원교 : 국립금오공과대, 국립안동대, 국립한국해양대, 국립한국교통대, 국립한밭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 기타 규정에 의한 운영

구분	복무기준		근거규정	
	직무 관련성 有	직무관련성 無		
국립 목포대	교원이 다른 대학 등에 출강하려면 사전에 총장의 출강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외 출강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내 담당 강의시간과 합하여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국립목포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40조(교외출강)	
	타대학 출강을 하고자하는 전임교원은 본교 근무경력 1년 이상이고 「국립목포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본교 직전년도 책임 시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립목포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 지침 제7조(사외이사 이외의 겸직허가)	
	모든 겸직활동이 총 근무시간의 1/5이하(주당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으로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국립목포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 지침 제12조(복무)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국립목포대학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기타 외부 강의 (겸직 허가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총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립목포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교직원은 제15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립목포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5조의1(외부강의등의 제한)	
충남대	구분	복무기준		근거규정
		직무 관련성 有	직무 관련성 無	
	겸직허가 특한외부강의	○	제한가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 충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기타 외부강의(겸직허가와)	○	제한가능	
광주교대	광주교육대학교 교원 복무 등 안내			

3. 고등교육법 개정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 관련

1) 고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의견

○ 주요의견

- (김재관): 대학 내 교수의 위상과 역할을 무시하는 입법으로 보임. 대평 내 비교수 집단이 담합 할 경우, 주도성 상실 우려됨.
- (정제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대학 보다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립대학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보임. 법안의 부당함과 폐해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함.
- (최인호): 구성 뿐만 아니라, 임기 1년으로 단축, 학생위원회 의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부분도 준엄하게 지적해야 함.
- (우흥명): 총장단과도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대응, 1월에 강원대에서 이 안을 논의사안으로 올릴 것을 제안.
- (김재관): 국립대학법 제정이 급선무임.
- (최인호): 국립대학법 제정을 촉구해야 함. 적어도 약속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국회에 국립대 교수들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는 효과는 있음.
- (김재관): 민주당 교육위 위원장 김영호 의원과 통화해서 이 법의 위험성을 알렸고 국교련 의견서도 보내드린다고 했음. 또 하나 총장직선제 학생 참여 비율 관련 입법 재발의를 한다고 하니 현재 보다 상향된 학생 참여 적절 비율에 대한 국교련 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교련 회장님께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음. 국교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이드라인을 알려 주심이 좋을 듯함.
- (김정구): 현재로서는 10% 이상은 곤란함.
- (김재관): 이번 대학평의회 개정안 구성 비율 가운데... 1/2을 1/3으로 제안한 것을 보면 의원들이 전혀 국립대 거버넌스를 모르는 것 같고 사전에 국교련과 소통도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지 아무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 같음.

2) 대학평의회와 통합국립대학위원회 관련

▶▶제안 요청 : 우흥명 강원대 회장

-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련, 12월11일 오전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 중 대학평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조회가 들어왔음.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5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제안 사항

1. 요약

- 교육부가 법안 발의를 통해 "통합국립대학위원회"가 대학평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지자체가 대학 거버넌스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고자 함.

2. 교수회 대책

- 기존의 평의회 기능을 유지/강화하여 대학 운영을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에 맡김.

3. 대응책.

- 고등교육법 개정 과정에 관여

- ① 통합국립대학위원회의 문제점 지적
- ② 국회 세미나등을 통해 의원 설득, 이해
- ③ 대안 법안 제안: 교수회, 대학평의회 기능 보강 (대학/학문의 자율성 보장)

○ 기타의견

- (김정구): 정을호 의원 발의 개정안 중 고민되는 사항은 제19조의 2에 해당하는
 1.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2. 한 구성단위의 평의원 수는 전체 평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음.
이에 대해 국교련의 논리를 정립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최인호): 민주화는 교권이 살아 있어야 가능한 것임. 지금보다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커지면 총장의 영향력은 더욱 세짐. 대학평의회 기능을 강화하면 헌법상 학문예술의 자유를 행사하는 주체인 교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에도 반하여 위헌임. 총장직선제 참여 비율 관련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취지가 같음.
- (류병관): 현재도 평의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심의기구임. 재정위원회처럼 의결기구화하여 교무회의 다음 최종 심의·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 (최인호): 의결기관으로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음. 교육공무원법상 교무통할권을 가지고 있어 쉽지 않음. 재정위원회도 예산결산 부분만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갖고 있음.
- (김정구):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1. 헌법 제22조 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 헌법 제31조 4항 대학의 자율성 보장임.
- (최인호): 위 개정안은 대학을 더욱 통제하고, 대표행위에 지나지 않음.
- (김정구): 원론으로 돌아가서 학문은 누가 하느냐? 누가 주체인가? 하는 문제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에서 학문의 주체는 교수이고 학생도 일부 인정되지만, 직원은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에 학문의 주체에서 제외됨.

4.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원 자격

▶▶제안 : 윤린 국립한밭대 회장

○ 질의 사항

- (윤 린):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원이 학교 보직자로 임명이 된 경우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적합한가에 대해 문의함. 학칙 등의 변경/수립 사항이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부서장(처장)께서 대평의원인 부분이 조금 어색함. 현재 한밭대학교의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에는 이런 내용은 없음.

○ 각 회원교별 평의위원회 구성현황(의견)


국립한국해양대	총장 추천 1인 참여, 다만 교원이지만 본부 입장이라는 한계가 있음.	강은숙 회장
국립부경대	총장 추천 교무부처장 1인 참여	정석호 회장
국립창원대	교원 13명, 비교원 13명(공무원 3명, 대학회계 3명, 조교 2명, 학생 3명, 동창회 1명, 총장임명 외부위원 동문 1명) 보직자 없음. 총장 1명 추천권은 외부인으로 동문 중에서 참여함	류병관 회장
전북대, 충남대	동문 중에서 1인 (보직자가 대평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됨)	김동근 회장 최인호 회장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8명(전원 교수평의회 추천), 직원 3명, 학생회 2명, 조교 1명, 총장 추천 1명 외부인, 도지사 추천 1명 외부인, 모두 16명으로 구성. 교무위원이 되면 교수회 임원을 탈퇴하도록 교수회 규정에 명시	정제순 회장
강원대	교수 11명(전원 교수회 추천), 직원 4명, 학생회 5명, 조교 2명 모두 22명으로 구성. 보직자는 전혀 없음.	우흥명 회장
한경국립대	보직자가 대학평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총장 추천 및 외부 추천도 없음.	공홍식 회장
인천대	교수 27명, 직원 3명이고 대학 교무위원은 평의원 할 수 없으며, 교수회 임원도 불가함.	박정준 회장
한국교원대	교원 7인, 직원 2인, 조교 1인, 학부생 2인, 대학원생 2인 및 외부교육전문가 1인, 총 15인임.	이용기 회장

5. 코러스 운영관련

▶ 정석호 국립부경대 교수회장

○ 코러스 운영 관련 의견

- 11/28, 부경대 학교 공무원노조지부장 전달사항으로서 코러스를 사학재단에서 운영하도록 함.
- 사학진흥재단에서 대학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국립대의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어서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하는 성명서 표명예정
--> 각 대학본부, 교수회 차원의 문제제기 필요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교 육 부</p> </div> <p>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차 코러스 운영위원회 결과 및 2024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 수정 안내</p> <p>1. 관련 가. 지역혁신대학지원과-2498('24.10.15.) 「2024년 제3차 코러스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나. 지역혁신대학지원과-2554('24.10.22.) 「2024년 코러스 운영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다. 지역혁신대학지원과-2648('24.10.28.) 「2024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 수정(안) 수립, 차관검제」</p> <p>2. 코러스 운영 위탁기관 변경에 대한 「2024년 제3차 코러스(KORUS)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의결을 [붙임1]과 같이, 그에 따른 「2024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 수정」을 [붙임2]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월부터 코러스 운영 위탁기관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변경(기존 KERIS) 운영</p> <p>3. 위탁기관은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코러스의 안정적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KERIS는 '24.12월말까지의 관련 업무 및 계약·회계·물품 등 인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4.12월말까지 구체적 인수계획 및 '25.1~4월까지의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24.11.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학 안내 병행)</p> <p>4. 아울러 「2024년 코러스 종합 성과발표회」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코러스 운영위원회 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계획 안내 등이 예정(세부계획 KERIS 별도 안내)되어 있으나, 운영위원 및 많은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 2024년 코러스 종합 성과발표회 개요 * 일시: '24.12.12(목) 13:00 ~ 12.13(금) 13:00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예종 글래드 호텔 * 주요내용: 코러스 운영 핵심 사항 성과 발표(오류제외, 신규개발 및 기능개선 등), 코러스 운영위원회 협의회 등</p> </div> <p>붙임 1. 2024년도 제3차 코러스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1부. 2. 2024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 수정 1부. 끝.</p>	<p>- 2. 코러스 운영 위탁기관 변경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가 원안가결 되었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변경 운영</p>
--	---

○ 의견

- (김정구): 각 대학 정보화본부(정보전산원)에서 문제제기 및 국립대 총장단에서도 교육부에 문제제기한 상황임

6. 전국교수연대회의에 대한 국교련 입장

▶▶ 제안 : 김정구 상임회장

○ 논의사항

- 전국교수연대회의 성명서에 대하여 사전 국교련과 논의없이 국교련 공동서명하에 제출함
- 고민정 의원실에서 자료2,3과 같이 국교위법 개정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의견제출했으나 최근에 교수연대에서 교수단체의 2인을 민교협 및 국교조를 추천하는 내용을 의원실에 전달했음
- 국교위 참여는 국교련에서 오래전부터 원했고 홍보를 했던 것으로서 이마저도 교수연대에서는 자기들의 주도 세력인 민교협과 국교조만 추천하는 것은 연대회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임
- 국교련은 명실상부한 2만여 국립대 평교수의 대의기구로서 국교련을 뺀 교수단체의 추천은 있을 수 없음. 민교협과 국교조는 몇몇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이권단체일 뿐임.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국교련이 더이상 교수연대회의와 연대할 수 없겠다 사료됨.

○ 자료1. 전국교수연대회의의 성명서(1.6.)

<p style="text-align: center;">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학구조개선법'의 충실한 사회적 공론화를 약속하라!</p> <p>국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 1월 9일(목) 오후 2시에 '사학구조개선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우리는 이 엄중한 비상사국에 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정적 법안인 '사학구조개선법' 공청회를 개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p> <p>작년 4월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된 이후, 지난 7월부터 우리는 국회 교육위원장이 김영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고등교육정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위원장과 민주당 간사는 관례에도 어긋나게 우리의 면담 요청을 회피해왔다. 그 이유는 어이없게도 여야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존재하는 '사학구조개선법'을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이었다.</p> <p>이 과정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난 12월 3일(화), 즉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가 벌어지던 날 국회 양당의 교육위 간사(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가 공동 주최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주관: 교육부/사학진흥재단)이라는 국회 토론회를 급조하여 개최하면서 법안 반대 측 인사를 발제자와 토론자에서 배제했던 것이다.</p> <p>이 토론회에서 공동 주최자인 문정복 의원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아예 불참했으며,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만 참석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외에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여러 명이 참석했고,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과 이주호 교육부장관까지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장 송연석 의원 등 국회 의원들 다수가 자리를 함께하여 크게 힘을 실는 분위기였다. 그날 밤에 터진 내란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p> <p>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된 후인 2024년 12월 17일에야 문정복 의원을 면담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내년 2026년 봄 이전에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되 올해 내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부탁했다. 그 핵심은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전제로 전반적인 대학구조조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p> <p>이 자리에서 문정복 의원은 올 1월 중에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고 반대 토론자 2명의 섭외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애초에 우리가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공청회를 요구해왔던 것이니 특별히 반대할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바로 1주일 후인 12월 24일에 문정복 의원은 불과 2주밖에 여유가 없는 날짜인 1월 9일(목)에 공청회를 정했으며 애초에 약속한 대로 법안 반대 의견을 가진 진술인 2명을 추천해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12월 24일이라는 시점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열도당토않은 이유로 거부하며 탄핵을 당하기 직전으로서 여당 의원들이 내란에 동</p>	<p>조하는 인행을 쏟아내기 시작한 위중한 때였다. 따라서 우리는 보좌진을 통해 이 공청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일정을 강행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p> <p>그러나 끝내 문정복 의원실은 1월 9일 공청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할 수 없이 공청회에 진술인을 내보냄으로써 참여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식적인 공청회를 외면할 경우 '사학구조조정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법안의 이해 당사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p> <p>거듭 발의되었던 법안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현재 국회에 상정된 5개 법안은 모두 의원 입법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교육부가 내놓은 정부 입법안이다. 교육부는 이미 인구감소가 예상되던 시점에서 1995년 49.8만명이던 대학 입학정원을 2002년에 65.6만명으로 32%나 늘렸으며, 1997년 대학실업준착주의 도입 이후 2014년까지 모두 107개의 대학 신규 설립을 허용하여 오늘의 대학 위기를 자초했다. 따라서 교육부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위에서 사학구조개선법안 논의가 진행되어야 옳은 것이며, 그 주체는 국회, 특히 교육위원회가 되어야 마땅하다.</p> <p>무척 착잡한 마음으로 공청회에 임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미 발의된 5개의 '사학구조개선법안'들을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교육부는 '사학구조개선법안'의 치명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3.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정책 대안 제출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하며,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해야 한다. 4. 국회 교육위원회, 특히 다수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이제까지의 독단적인 행보를 반성하고, 22대 국회 상반기가 끝나는 내년 봄까지 앞으로 1년 이상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약속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1월 6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 교수 연대회의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p>
--	---

○ 자료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국회, 교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추천 위원을 축소하고 위원 구성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음.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논의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청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방청과 회의록의 작성·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1. -----7명----- -----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3명-----
3. 교육부차관	<삭 제>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4. ----- -----가 추천하는 2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5. -----3명
<신 설>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장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명
<신 설>	5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7. -----제182조제1항제1호----- -----

<p>④ · ⑤ (생략)</p> <p>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p> <p>⑦ · ⑧ (생략)</p> <p>제15조(회의)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p> <p>③ · ④ (생략)</p> <p>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⑥ (생략)</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p> <p>⑦ · ⑧ (현행과 같음)</p> <p>제1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다만, 제11조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속기방법으로 작성하여-----.</p> <p>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p> <p>2.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p> <p>3. 제15조제4항에 따른 회의참석자의 성명</p> <p>4. 상정안건,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p> <p>5. 표결 수</p> <p>6. 위원장의 보고</p> <p>7.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⑥ 위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⑦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⑧ (현행 제6항과 같음)</p>
--	---

○ 자료3. 국교위원 구성 개편(안)

구분	현재	개편(안)	증감	비고
국회	9명	7명	△2	각 2명씩 감축
대통령	5명	3명	△2	
교원 단체	2명	3명	+ 1	1명 증원
총장 단체	2명	2명	-	현 유지
교수 단체	-	2명	+ 2	2명 증원
교육감협의회	1명	2명	+ 1	1명 증원
교육부 차관	1명	-	△1	1명 감축
시도지사협의회	1명	1명	-	현 유지
교장 단체	-	1명	+ 1	1명 증원
합계	21명	21명		

7.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근거한 학교별 규정마련

▶▶ 제안 : 윤린 국립한밭대 회장

○ 논의사항

- 학교 본부에서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준하여 학교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책임자로 총무과장을 규정하였음.
- 공익신고의 해당 범위가 “교직원“인데 상당한 권한이 부여된 공익신고책임자를 총무과장으로 임명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요청

○ 의견

- (류병관): 각 대학 인권센터장이 적절할 것 같으며, 법률에 근거 부교수이상 임명 독립기구로 운영하게 되어 있음.
- (정석호): 부경대의 경우 총무과장이 책임자로 임명되어 있는 듯 하며, 필요하다면 인권센터장으로 이관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음
- (우흥명): 유 회장님의 전문적 견해에 동의함. 아래자료 참조.

• 각 대학에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는 대학의 성격, 규모, 조직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책이나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함.

1. 감사실장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

대학 내 부정행위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익신고 처리와 보호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이들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신고를 접수, 조사, 처리하며, 신고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

2. 윤리경영 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부서나 준법감시인은 대학 내 투명성과 윤리 준수를 감독하며 공익신고 보호 업무를 적절히 수행가능함

3. 인권센터장 또는 학생권익보호 책임자

대학 인권센터는 학생,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권익 보호를 담당하므로, 공익신고 처리와 보호 업무를 병행 가능함. 특히, 인권 침해와 관련된 신고는 이 부서가 적합함.

4. 법무처 또는 총괄 행정 담당 부서

법무 관련 부서는 법적 준수를 감독하며 공익신고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5. 총장 직속 특임위원회 구성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총장 직속으로 공익신고 처리와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음

※ 주요 고려사항

- 독립성 확보: 책임자는 대학의 권력 구조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문성: 공익신고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합니다.
- 신뢰성: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인물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법령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고자 보호 및 신고 처리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를 책임질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8. 국교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제안

▶▶ 제안: 우흥명 강원대 회장

① 배경

- 정부/교육부, 국회, 학내 분위기 모두 교권을 포함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 우려.

② 대응 변화 필요.

- 국교련 특성상, 수세적 방어로는 감당이 안되는 듯함.
- 조직력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교수회장님들의 전문분야별로라도 대응분야를 나누어서라도, 공세라기 보다는, 국교련에서 먼저 현안을 고민하고, 심포지움 등을 통해 도출한 안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바꿀수는 없을까 고민이 필요함

③ 국교련 활동 제안 (참고 예시)

가. 교육정책/법률 전반에 걸친 정책연구 (정책연구 확대)

: 국교련 회원교의 학내외 문제점 제시 → 관련된 정책연구 안건 정리

나.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등과 정책협의체 구성.

: 교육정책의 소통, 토론

다.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한 컨세서스 형성

라. 정책제언

마. 의원 입법등을 통한 적용 등에 대하여 전략적 대응 논의 필요

9. 제9차 정기총회 회의장소 변경

▶▶ 제안: 김정구 상임회장

- 1월27일 공휴일 지정에 따른 제9차 정기총회(1월24일)가 설날 연휴시작 주말과 중첩되어 부득이하게 비대면(줌)으로 회의운영 논의

- 전체 23명 투표중 21명 비대면 줌회의 찬성

논의사항 2.

기타 안건

1. 대학 교수조직 현황 분석

▶▶발표 : 이용기 의장(한국교원대)

○ 대학평의원회 규정 및 국교련 설문조사 결과 (중간발표)

※국교련 회원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자료 온라인 공유

※비대면 전환으로 차기 회의 시 발표 예정

2. 국교련 워크숍 계획

○ 일정(안)

– 2025.2.16.(일)~2.17.(월) 1박2일

○ 장소

– 대전 유성온천 일원

○ 회의일정

– 2025.2.16.(일) ~ 2.17.(월)

시 간	내 용	비 고
1일차	<input type="checkbox"/> 만찬 및 숙박	
2일차	<input type="checkbox"/> 개회 및 제27대 상임회장 인사말씀 <input type="checkbox"/> 제28대 상임회장 당선자 인사말씀 <input type="checkbox"/> 국교련 미래비전과 전략 세미나 <input type="checkbox"/> 오찬 및 해산	

VI. 첨부자료

자료 1.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칙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약칭 “국교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가 연대하여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교육, 연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공립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는 전국의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상임회장교에 둔다.

제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상임회장의 임기 만료 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인 이상의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서면위임을 포함한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⑤ 총회는 출석 회장(의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은 불참시 총회에서 권한행사를 소속대학의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의 2/3 이상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 결의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에는 재적 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6조(상임회장 및 공동회장단) ① 본회에는 상임회장 1인을 둔다.

② 본회에는 10인 이내의 공동회장을 두되,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상임회장이 추천하는 3인

2.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이 추천하는 2인
3.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이 추천하는 2인
4. 교육대학(교원대 포함) 교수회 상임회장이 추천하는 1인
5. 회장단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포함)에서 추천하는 약간 명

제7조(상임회장 및 공동회장단의 선출) ① 각 회원교의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위임받아 출석한 대리인은 선거권만을 가진다.

② 상임회장은 소속대학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제6조 제2항의 공동회장은 상임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임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모든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이 각 1표씩 가진다. 다만, 개별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이 행사하는 1표의 실제 투표가치는 개별 대학의 교원수를 감안하여 산정한 붙임 1의 보정가치를 따른다.

제8조(상임회장 및 공동회장의 임기) ①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회장이 상임회장의 직을 사퇴하거나, 유고의 사유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에 그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이면 재선출한다.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동회장단이 협의하여 결정한 공동회장 중 1인이 상임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공동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제7조 제3항에 의해 선정된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④ 재선출된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상임회장 및 공동회장의 직무) ① 상임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처리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② 공동회장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처리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감사) ① 본회에는 감사 2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퇴나 기타 사유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 본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 전문위원 및 간사 약간 명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상임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상임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④ 전문위원과 간사는 상임회장이 임명하며, 상임회장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12조(고문, 자문위원) 상임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임 상임회장 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 회원교 전임 교수(협의)회 회장(의장) 중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위원회) ① 본 회의 정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회장을 보좌하는 정책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본회에 총회의 결정으로 상임회장을 보좌하는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회장(의장)단 회의) ① 회장단 회의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단 구성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회장은 회장단 회의의 의장을, 사무총장은 회장단 회의의 서기를 겸한다.

③ 회의는 회장단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회장단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무총장, 감사, 고문 및 자문위원, 정책위원(장), 전문위원, 회원교 교수(협의)회 임원은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회장단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
2. 상임회장이나 회장단 구성원 1/3 이상이 회의에 상정한 안건
3. 회장단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재정) ① 회원교는 총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연회비와 사업에 따른 분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회원자격의 정지)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일반 관례)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9조(개정) 이 회칙은 총회에서 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칙은 1994년 04월 01일 총회에서 제정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부 칙] 이 개정 회칙은 1997년 04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1999년 04월 0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0년 0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2년 02월 0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4년 04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5년 0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7년 04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0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09년 0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0년 02월 0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1년 04월 0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2년 02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03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09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03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08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22년 01월 0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22년 03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24년 03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자료 2.	제27대 국교련 일정
--------------	--------------------

일정	일정	비고
3/22	임 시 총 회	회칙개정, 출범식 및 취임식 개최
4/26	상 임 위 원 회	대면+비대면, 비상임위원 참여 가능
5/24	상 임 위 원 회	대면+비대면, 비상임위원 참여 가능
6/21	회 장 단 회 의	정책포럼 개최 (지방대 발전방안(안))
7월	휴 회	
8/16	회 장 단 회 의	고 고현철 교수 기념식 참석, 부산대
9/27	회 장 단 회 의	대면+비대면, 비상임위원 참여 가능
10/25	회 장 단 회 의	대면+비대면, 비상임위원 참여 가능
11/22	회 장 단 회 의	정책포럼 개최 (국립대학법(안)), 제주대
12/27	휴 회	
1/24	정 기 총 회	결산보고, 상임회장 선출
2/17	워 크 샵 (예 정)	상임회장 인수인계 및 국교련 미래 비전과 전략 세미나

○ 전체 회장단이 참여하는 회의는 5회만 개최

- ① 잦은 전체 회장단 회의로 피로 누적 호소 및 회의의 효율성 저하
- ②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전체회장단 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로 나누어 개최
- ③ 임시총회 1회(3월), 정기총회 1회(1월), 전체 회장단 회의 3회(6월, 8월, 11월, 정책포럼 2회, 고 고현철교수 기념식 참석 1회와 병행)

자료 3.

회원교 연락처 (2025. 1. 20. 현재)

	대학	직책	성명	전공학과	연구실	휴대전화	이메일	임기
1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우흥명	수의학과	033-250-8651	010-7208-2251	woohm@kangwon.ac.kr	2024. 3. ~ 2026. 2.
		부회장(춘천)	(공석)					
		부회장(삼척)	강중수	사회복지학과	033-570-6364	010-5550-6126	jskang@kangwon.ac.kr	
		부회장(춘천)	윤은숙	자유전공학부	033-570-6609	010-7581-8799	tongalak@kangwon.ac.kr	
		사무총장(춘천)	(공석)					
		사무총장(삼척)	(공석)					
		■ 사무실 : 이메일 profassociation@kangwon.ac.kr / 전화 033-250-7328 / 팩스 033-259-5502 / 담당자 신명화 ■ 주소 :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대학본부 509호 교수회						
2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	회장	민병익	행정학과	055-772-1284	010-4313-7470	min@gnu.ac.kr	2024. 3. ~ 2026. 2.
		부회장(가좌)	정우식	생명과학부	055-772-1363	010-3410-7002	chungws@gnu.ac.kr	
		부회장(통영)	김무찬	해양환경공학과	055-772-9135	010-2586-0940	kmc81@gnu.ac.kr	
		부회장(의간호대)	배인규	의학과(내과학교실)	055-750-8055	010-4570-4182	ttezebae@gmail.com	
		부회장(칠암)	조윤진	디자인비즈니스학과	055-772-3376	010-3896-9990	ycho@gnu.ac.kr	
		사무국장	오재신	산업경영학과	055-772-3882	010-7591-3005	jsoh@gnu.ac.kr	
		정책국장	안용태	에너지공학과	055-772-1516	010-9911-6842	ytahn@gnu.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gnu.ac.kr / 전화 055-772-0051 / 팩스 055-772-0053 / 담당자 신영선 010-8593-3961 ■ 주소 :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본부 507호 교수회 사무실								
3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철호	동양윤리	031-470-6206	010-8724-0448	kch1@ginue.ac.kr	2023. 3. ~ 2025. 2.
		부회장	임희준	과학교육	031-470-6247	010-6462-3414	limhj@ginue.ac.kr	
		부회장	김호	유아교육 (유아놀이교육)	031-470-6322	010-5775-3279	hoho@ginue.ac.kr	
		사무총무	최중현	수학교육	032-540-1235	010-6271-6485	jhchoi08@ginue.ac.kr	
		편집총무	남보라	영어교육	032-540-1332	010-8647-9836	bnam@ginue.ac.kr	
■ 사무실 : 이메일 kch1@ginue.ac.kr / 전화 010-6271-6485 / 담당자 최중현 ■ 주소 : (139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인문사회관 325호 김철호 교수 연구실								

4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조혜영			010-8935-6930		2024. 4. ~ 2026. 3.
		■ 사무실 : 이메일 profcoun@gjue.ac.kr / 전화 041-850-1727 / 팩스 041-850-1587 / 담당자 이시온(조교) ■ 주소 : (32553)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청목관 405호 교육대학원 행정실						
5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이대현	수학교육	062-520-4148	010-3683-6980	leedh@gnue.ac.kr	2023. 9. ~ 2025. 8.
		부회장	이미자	교육공학	062-520-4202	010-4536-7988	leemj@gnue.ac.kr	
		사무총장	윤관기	음악교육학	062-520-4174	010-6776-6338	erinyes@gnue.ac.kr	
■ 사무실 : 이메일 seungha74@gnue.ac.kr / 전화 062-520-4145 / 팩스 062-520-4147 / 담당자 이승하 ■ 주소 : (61204)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6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최성범	체육학과	033-640-2555	010-6354-9030	sbchoi@gwnu.ac.kr	2023.9.18. ~ 2025.9.17.
		부회장(강릉)	이충일	해양생태환경학과	033-640-2855	010-3595-3914	leeci@gwnu.ac.kr	2023.9.26. ~ 2025.9.17.
		사무처장	박병선	사회복지학과	033-760-8863	010-2626-5778	bspark@gwnu.ac.kr	
		사무처장	이효진	치위생학과	033-640-3028	010-9566-9334	eehjin@gwnu.ac.kr	
		정책국장	이이범	일본학과	033-640-2159	010-5344-8826	iibeom@gwnu.ac.kr	
■ 사무실 : 이메일 gwnupa@gwnu.ac.kr / 전화 033-640-2749 ■ 주소 : (2545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길 7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214호 교수회								
7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지훈	지리교육	041-850-8245	010-8420-7634	pollenpjh@kongju.ac.kr	2024. 9. ~ 2026. 8.
		부회장	이기형	교양학부	041-856-8667	010-4757-6686	howard@kongju.ac.kr	
		부회장	어수형	산림과학과	041-330-1301	010-2651-9008	eosh@kongju.ac.kr	
		부회장	이정윤	디자인컨버전스학과	041-521-9406	010-3830-7355	jeong86@kongju.ac.kr	
		부회장	류주현	지리교육	041-850-8242	010-2271-1006	ryujh@kongju.ac.kr	
		사무국장	윤동환	관광&영어통역 융복합학과	041-850-8971	041-2782-2409	dymoon@kongju.ac.kr	
■ 사무실 : 이메일 prof@kongju.ac.kr / 전화 041-850-8760 / 팩스 041-850-8761 / 담당자 이은아 ■ 주소 :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관 203호 교수회 사무국								
8	국립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조혜영		063-469-1989	010-7541-7958	elfish80@kunsan.ac.kr	2024. 3. ~ 2026. 3.
		상임부의장	정초영		063-469-1815			
		사무처장	지광운		063-469-4455			
		간사	김수호		063-469-4451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kunsan.ac.kr / 전화 063-469-4451 / 담당자 김수호 ■ 주소 : (54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국립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층 2418호 교수평의회								

9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회장	장진호	섬유공학	054-478-7715	010-2434-9706	jh.jang@kumoh.ac.kr	2023. 3. ~ 2025. 2.
		부회장	박경석	기계공학	054-478-7322	010-9568-4242	kspark@kumoh.ac.kr	
		사무국장	이희진	전기공학	054-478-7437	010-6799-0185	jinlee@kumoh.ac.kr	
		감사	김상호	산업공학	054-478-7656	010-9502-4387	kimsh@kumoh.ac.kr	
		감사	정연구	환경공학	054-478-7631	010-6486-7631	jeongyk@kumoh.ac.kr	
<p>■ 사무실 : 이메일 prof@kumoh.ac.kr / 전화 054-478-6963 / 팩스 054-478-6964 / 담당자 김민아 ■ 주소 : (39177)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글로벌관 601호 교수회</p>								
10	국립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정석원	컴퓨터학부	061-450-2714	010-7727-8735	jsw@mokpo.ac.kr	2024. 5. ~ 2026. 5.
		부위원장	장시복	경제무역학부	061-450-2213	010-5637-9709	sibok@mokpo.ac.kr	
		사무처장	이준호	수학교육과	061-450-2313	010-2905-8922	junho@mokpo.ac.kr	
		편집위원장	정성훈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	061-450-2119	010-3122-0906	kobe99@mokpo.ac.kr	
<p>■ 사무실 : 이메일 pyung@mokpo.ac.kr / 전화 061-450-2961 / 팩스 061-450-2974 / 담당자 김은미 ■ 주소 : (5855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666 국립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p>								
11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임남균		061-240-7382	010-9802-0582	wjyang@mmu.ac.kr	2024. 4. ~ 2026. 3.
<p>■ 사무실 : 이메일 proforg@mmu.ac.kr / 전화 061-240-7382(도서관) / 담당자 손지선(도서관 겸직) ■ 주소 : (58628)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도서관 3층 종합자료실</p>								
12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정석호	기계시스템공학전공	051-629-6198	010-6346-9498	sukhojung@pknu.ac.kr	2024. 3. ~ 2026. 2.
		부회장	고명석	해양생산시스템공학부	051-629-5884	010-8434-6710	shimwon1996@naver.com	
		총무이사	양현경	스마트전자공학전공	051-629-6868	010-4543-3292	hkyang@pknu.ac.kr	
		교학이사	김영호	해양학전공	051-629-6571	010-4727-8728	yhokim@pknu.ac.kr	
		기획이사	김수한	토목공학전공	051-629-6065	010-7377-3398	suhankim@pknu.ac.kr	
		홍보이사	유정호	국제통상학부	051-629-5763	010-9879-7889	jhyoo@pknu.ac.kr	
<p>■ 사무실 : 이메일 faculty@pknu.ac.kr / 전화 051-629-7321 / 담당자 김재영 ■ 주소 :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국립부경대학교 대학본부 602호 교수회 사무실</p>								
13	국립순천대학교 교수회	의장	손영진	약학과	061-750-3755	010-4094-6216	sony@scnu.ac.kr	2024.12.12. ~ 2026.12.11.
		부위원장						
		사무처장						
<p>■ 사무실 : 이메일 hjkwon@scnu.ac.kr / 전화 061-750-3993 / 팩스 061-750-3998 / 담당자 권현정 ■ 주소 : (57922)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국립순천대학교 대학본부 6층 602호 교수회</p>								

14	국립안동대학교 교수회	회장	안태창	로봇공학과	054-820-7767	010-2731-5132	tcmerias@anu.ac.kr	2024. 3. ~ 2026. 2.
		부회장	장창용	체육학과	054-820-5576	010-4879-8135	jangcy529@anu.ac.kr	
		사무국장	신동희	스마트센서공학과	054-820-5449	010-5226-5841	sdh0105@andong.ac.kr	
		정책국장	성지혜	식품생명공학과	054-820-5752	010-9496-1336	jeehye@anu.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anu.ac.kr / 전화 054-820-7201 / 팩스 054-820-7202 / 담당자 권소영 ■ 주소 : (36729)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국립안동대학교 정보통신원 4층 404호 교수회						
15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류병관	법학과	055-213-3208	010-2314-1688	ryu1688@changwon.ac.kr	2024.9.10. ~ 2026.9.9.
		부의장	심성식	국제무역학과	055-213-3327	010-3219-6808	bonguk9@changwon.ac.kr	
		사무국장	박정선	국어국문학과	055-213-3101	010-3521-1674	jsun@changwon.ac.kr	
		■ 사무실 : 이메일 kyosu@changwon.ac.kr / 전화 055-213-4705 / 팩스 055-213-4709 / 담당자 황시영 ■ 주소 : (5114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20 국립창원대학교 대학본부 2층 1212호 교수회						
16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	회장	정제순	스포츠의학과	043-841-5992	010-9526-4915	jschung@ut.ac.kr	2024. 3. ~ 2026. 2.
		부회장	박병준	교양학부	043-841-5491	010-9612-9106	pjpark@ut.ac.kr	
		기획국장	진주혜	간호학과	043-820-5180	010-3179-9223	jhjin@ut.ac.kr	
		사무처장	이귀준	전기공학과	043-841-5147	010-3585-8583	kuijun.lee@ut.ac.kr	
		■ 사무실 : 이메일 utpa@ut.ac.kr / 전화 043-841-5048 / 팩스 043-841-5049 / 담당자 임류아 010-4526-2073 ■ 주소 : (27469)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806호 교수회						
17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회장	강은숙	해양행정학	051-410-4451	010-7337-0053	eskang@kmou.ac.kr	2023. 3. ~ 2025. 2.
		부회장	유성진					
		사무처장	조은별	교직	051-410-4576	010-2611-0589	edustar@kmou.ac.kr	
		■ 사무실 : 이메일 kyohyup@kmou.ac.kr / 전화 051-410-4200 / 팩스 051-404-3982 / 담당자 조지건 ■ 주소 :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18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회	회장	윤린	기계공학	042-821-1732	010-8807-7415	yunrin@hanbat.ac.kr	2024.10.23. ~ 2025.5.27.
		부회장	주진철	토목환경공학	042-821-1264	010-2237-0626	jincjoo@hanbat.ac.kr	
		부회장	장한얼	전산학	042-821-1142	010-3032-2710	hejang@hanbat.ac.kr	
		사무처장	이민우	항공우주공학	042-821-1158	010-8264-3827	mwlee@hanbat.ac.kr	
		정책국장	한하림	한국어문화교육학	042-821-1363	010-2536-7550	didibaj153@hanbat.ac.kr	
		■ 사무실 : 이메일 kyopyung@hanbat.ac.kr / 전화 042-821-1466 / 팩스 042-821-1895 / 담당자 박영숙 ■ 주소 : (34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국립한밭대학교 대학본부(N1동) 106호 교수회						

19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주현준	교육학과	053-620-1515	010-9407-7169	joohyunj@dnue.ac.kr	2024. 3. ~ 2025. 3.
		부회장	이진택	체육교육과	053-620-1367	010-5283-2508	wbhjlee@dnue.ac.kr	
		부회장	최진경	과학교육과	053-620-1345	010-8220-6240	jkchoi624@dnue.ac.kr	
		총무	여승현	수학교육과	053-620-1332	010-9726-4241	shyeo@dnue.ac.kr	
		간사	장윤선	교육학과	053-620-1412	010-6471-9801	ysj@dnue.ac.kr	
		감사	황대진	음악	053-620-1376	010-9109-7047	djwhang@dnue.ac.k	
<p>■ 사무실 : 이메일 joohyunj@dnue.ac.kr / 전화 053-620-1400 / 팩스 053-620-1510 / 담당자 오연경 ■ 주소 : (4241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511호 교육학과</p>								
20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용민	사회교육	051-500-7224	010-3673-2261	kymin@bnue.ac.kr	2025. 1. ~ 2027. 12.
		부회장						
		총무						
<p>■ 사무실 : 이메일 kymin@bnue.ac.kr / 전화 051-500-7224 / 팩스 051-500-7221 / 담당자 김용민 ■ 주소 : (4750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연구관 1층 교수협의회 사무실</p>								
21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정구	정보컴퓨터공학부	051-510-3733	010-5093-3733	kimjg@pusan.ac.kr	2023. 3. ~ 2025. 2.
		수석부회장	권순복	언어정보학과	051-510-2003	010-8519-9802	sbkwon@pusan.ac.kr	
		부회장	배순식	의학과	051-510-8065	010-4573-3105	sunsik@pusan.ac.kr	
		부회장	권정남	한의학과	051-510-5956 055-360-5666(진료실)	010-3863-8359	jnkwon@pusan.ac.kr	
		사무총장	선호근	통계학과	051-510-2257	010-8685-9875	hsun@pusan.ac.kr	
		권익복지위원장	신태순	동물생명자원과학과	055-350-5514	010-7104-5374	tsshin@pusan.ac.kr	
		기획홍보위원장	김중수	국어교육과	051-510-2603	010-8711-3317	so@pusan.ac.kr	
		재정위원장	허석렬	IT응용공학과	055-510-5418	010-5531-5443	syheo@pusan.ac.kr	
		학사위원장	김현수	법학과	051-510-2509	010-6375-8280	hkim202@pusan.ac.kr	
		캠퍼스환경위원장	권준호	데이터사이언스학과	051-510-3149	010-4754-8528	jhkwon@pusan.ac.kr	
<p>■ 사무실 : 이메일 facultycouncil@pusan.ac.kr / 전화 051-510-1224~5 / 팩스 051-515-2236 / 담당자 이민희, 현경운 ■ 주소 :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p>								

2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김원필	건축학부		010-3923-6588	wphil@seoultech.ac.kr	2023. 3. ~ 2025. 2.
		부의장	오영재	시각디자인전공		010-2224-7081	ohyj@seoultech.ac.kr	
		부의장	권혁진	국방방호학과		010-5851-9671	kwonhj@seoultech.ac.kr	
		사무처장	김성수	인문사회교양학부		010-2722-5595	sungsookim@seoultech.ac.kr	
<p>■ 사무실 : 이메일 Prof_council@seoultech.ac.kr 또는 hounok@seoultech.ac.kr / 전화 02-970-6907 / 담당자 김현욱 ■ 주소 :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본부 501호</p>								
23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임정목		02-880-4806	010-3111-9111	limjm@snu.ac.kr	2021. 4. ~ 2025. 3.
		부회장	임호준		02-880-4096	010-2393-1841	hojoon33@snu.ac.kr	
		총무이사	노민수		02-880-2481	010-3030-0759	minsoonoh@snu.ac.kr	
<p>■ 사무실 : 이메일 faculty@snu.ac.kr / 전화 02-880-5195 / 팩스 02-883-6315 / 담당자 김영남 ■ 주소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행정관(60동) 2층 교수협의회</p>								
24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선형	환경원예학과	02-6490-2689	010-4554-3368	pgel2006@gmail.com	2024. 9. ~ 2026. 8.
		부회장	최경우	생명과학과	02-6490-2673	010-8628-5729	jchoe21@uos.ac.kr	
		사무총장	김완태	생명과학과	02-6490-2669	010-8990-7359	wantaekim@uos.ac.kr	
		사무부총장	최윤소	스포츠과학과	02-6490-2957	010-9741-0778	yoonsochoi@uos.ac.kr	
<p>■ 사무실 : 이메일 faculty@uos.ac.kr / 전화 02-6490-6802 / 팩스 02-6490-6804 / 담당자 김경아 ■ 주소 :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대학본부 6층 7615호 교수회</p>								
25	인천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정준	체육교육과	032-835-8571	010-5323-6837	sportpark@incheon.ac.kr	2024. 11. ~ 2026. 10.
		부회장	신은기	도시건축학부	032-835-8949	010-3180-7032	eungeecn@inu.ac.kr	
		정책국장	차재민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	032-835-8686	010-3187-2051	j.cha@inu.ac.kr	
		사무국장	이승용	체육교육과	032-835-8575	010-4471-4711	j.cha@inu.ac.kr	
<p>■ 사무실 : 이메일 inufa@inu.ac.kr / 전화 032-835-8857 / 팩스 032-835-0715 / 담당자 김찬영, 강초연 ■ 주소 :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교수회관(2호관) 101호 교수회 사무실</p>								
26	전남대학교 교수평의회 / 교수회	의장/회장	김재관		062-530-5000	010-3367-2088	jkkim543@jnu.ac.kr	2023.9.1. ~ 2025.9.1.
		(교수평의회)부의장	이정환		062-530-1730	010-6208-1713	jhwan@jnu.ac.kr	
		(교수회)수석부회장	김민석		062-530-4823	010-2292-8672	greatone@jnu.ac.kr	
		(교수회)부회장	김대익		061-659-7233	010-5049-3455	daeik@jnu.ac.kr	
		(여교수회)부회장	허영란		062-530-1338	010-8609-3544	yrhuh@jnu.ac.kr	
		기획이사	정정호		062-530-3022	010-7644-4890	vava@jnu.ac.kr	
		홍보이사	조훈성		062-530-1717	010-8545-2816	cho.hoonsung@jnu.ac.kr	
		총무이사/사무처장	정재식		062-530-3442	010-9368-1739	jjs3098@jnu.ac.kr	
<p>■ 사무실 : 이메일 jnuprof@jnu.ac.kr / 전화 062-530-5003 / 팩스 062-530-5004 / 담당자 정재우 010-9149-0976 ■ 주소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대학본부 3층 304호 교수평의회/교수회</p>								

27	전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동근	법학과	063-270-2658	010-3717-4153	kdgsu@jbnu.ac.kr	2023. 3. ~ 2025. 2.
		부회장	임재혁	기계공학과	063-270-2326	010-3262-9409	jaehyuklim@jbnu.ac.kr	
		부회장	김혜영	간호학과	063-270-4618	010-9604-3359	tcellkim@jbnu.ac.kr	
		사무처장	김명훈	물리학과	063-270-3328	010-4749-1939	mwkim@jbnu.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jbnu.ac.kr / 전화 063-270-2011 / 팩스 063-270-2012 / 담당자 한윤희 ■ 주소 :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진수당 364호						
28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송지환	체육교육과	063-281-7176	010-8645-4326	ufosong114@jnue.kr	2024. 7. ~ 2026. 6.
		부회장	김성식	영어교육과	063-281-7194	010-9488-7355	sskim77@jnue.kr	
		부회장	배선아	실과교육과	063-281-7155	010-5460-3870	sabae@jnue.kr	
		총무	김현태	과학교육과	063-281-7146	010-3916-6600	htkim@jnue.kr	
		■ 사무실 : 이메일 ufosong114@jnue.kr / 전화 063-281-7174 / 팩스 063- 281-7237 / 담당자 송지환 ■ 주소 :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전주교육대학교 체육센터 송지환 교수 연구실						
29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양창용	영어교육과	064-754-3224	010-4341-0406	chejujyc@jejunu.ac.kr	2024. 3. ~ 2025. 2.
		수석부회장	김종우	초등실과교육전공	064-754-4885	010-8827-7459	kim@jejunu.ac.kr	
		부회장/ 여교수협의회	정수연	경제학과	064-754-3162	010-2944-8021	jsyecono2@jejunu.ac.kr	
		부회장	박현정	수의학과	064-754-3162	010-7655-8917	hjpark@jejunu.ac.kr	
		사무처장	김진일	간호학과	064-754-3755	010-9231-7352	neoreva@jejunu.ac.kr	
		정책처장	김성운	수학과	064-754-3563	010-3282-0772	sungwoon@jejunu.ac.kr	
		기획·연구위원장	김수균	컴퓨터공학전공	064-754-3659	010-3747-6894	kimsk@jejunu.ac.kr	
		교권·복지위원장	노병주	스포츠과학과	064-754-3588	010-4026-7705	bnoh@jejunu.ac.kr	
		학사·재정위원장	현창림	의학과	064-754-8118	010-4612-5956	venisua@jejunu.ac.kr	
		소통·홍보위원장	배지영	약학과	064-754-8194	010-6626-7157	jybae@jejunu.ac.kr	
		제도개선위원장	고중산	경제학과	064-754-3165	010-4109-3264	jsko@jejunu.ac.kr	
		특별위원회위원장	(공석)					
■ 사무실 : 이메일 jejuprof@jejunu.ac.kr / 전화 064-754-2088 / 팩스 064-754-2089 / 담당자 홍지아 ■ 주소 :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교수회관 2층								

30	진주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최수남	체육교육	055-740-1257	010-8359-3155	csnpower@cue.ac.kr	2023. 2. ~ 2025. 1.
		부회장						
		총무						
		■ 사무실 : 이메일 sokekwon@cue.ac.kr / 전화 055-740-1318 / 담당자 권서경 ■ 주소 : (52673)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369번길 3 진주교육대학교 제1강의동 5층 체육교육과						
31	청주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강병직	미술교육과	043-299-0754	010-9805-2000	kang12@cje.ac.kr	2024. 3. ~ 2026. 3.
		총무간사	이호준	교육학과	043-299-0815	010-3151-5986	mac0509@cje.ac.kr	
		재무간사	김은향	교육학과	043-299-0809	010-9177-6588	hojunlee@cje.ac.kr	
		기록간사	정동연	사회과교육과	043-299-0733	010-2127-2267	jungdy@vje.ac.kr	
■ 사무실 : 이메일 kang12@cje.ac.kr / 전화 043-299-0754 / 팩스 043-299-0779 / 담당자 강병직 ■ 주소 : (2869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관 105호								
32	춘천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배성제	체육교육	033-260-6502	010-4357-7291	bae7291@cnue.ac.kr	2024. 3. ~ 2025. 2.
		부회장	류지영	미술교육과	033-260-6493	010-4513-0441	rjyeong@cnue.ac.kr	
		부회장	조상연	교육학과	033-260-6441	010-5477-9312	choo90@cnue.ac.kr	
		사무처장	최종갑	영어교육과	033-260-6522	010-4629-5800	jchoi@cnue.ac.kr	
		사무부처장	김태환	사회과교육과	033-260-6423	010-9149-5012	ador252@cnue.ac.kr	
■ 사무실 : 이메일 iso@cnue.ac.kr / 전화 033-260-6124 / 팩스 033-264-3021 / 담당자 이성욱 ■ 주소 : (2432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126 춘천교육대학교 석우관 2층 215호 교무처								
33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최인호	법학과	042-821-5802	010-9406-4719	iamchoi99@cnu.ac.kr	2021. 3. ~ 2025. 2.
		부회장	김윤용	토목공학과	042-821-7004	010-2490-8616	yunkim@cnu.ac.kr	
		부회장	정세은		042-821-5580	010-8330-3348	jseeun@cnu.ac.kr	
		사무처장	유상석	기계공학부	042-821-5646	010-3713-5114	sangseok@cnu.ac.kr	
		운영위원	조성환	디자인창의학과	042-821-6985	010-4211-1710	shj02443@cnu.ac.kr	
		운영위원	육홍선		042-821-6770	010-8329-5298	hjchoi@cnu.ac.kr	
		운영위원	주향연		042-821-6392	010-9303-7712	sashin@cnu.ac.kr	
		운영위원	서연주		042-821-5362	010-2588-1147	srosa@cnu.ac.kr	
		운영위원	홍장희		042-580-8256	010-2870-9050	boniii@cnu.ac.kr	
■ 사무실 : 이메일 prof@cnu.ac.kr / 전화 042-821-5091 / 팩스 042-822-9637 / 담당자 이대은 ■ 주소 :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본부별관(E7-1동) 5층 515호								

34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종진		043-261-2764	010-2505-0533	parkjj@cbnu.ac.kr	2024. 3. ~ 2026. 2.
		부회장/ 교학분과위원장	류관희		043-261-2788	010-8508-2788	khyoo@cbnu.ac.kr	
		사무처장	장상민		043-261-2310	010-7244-7358	smjang@cbnu.ac.kr	
		기획이사	김형범		043-261-2737	010-5348-5407	hyoungbum21@cbnu.ac.kr	
		정책이사	서경욱		043-261-2543	010-4185-9826	jwseo@cbnu.ac.kr	
		재정분과위원장	김남준		043-261-2708	010-8226-6084	njkim@cbnu.ac.kr	
		법제분과위원장	신정규		043-261-2629	010-5154-4249	shinjj@ccbnu.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chungbuk.ac.kr / 전화 043-261-3087 / 팩스 043-276-8314 / 담당자 권속희 ■ 주소 :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대학본부(N10동) 7층 701호						
35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회	회장	공홍식	생명공학부	031-670-5334	010-9089-5307	kebinkhs@hknu.ac.kr	2023.10.28. ~ 2025.10.27.
		부회장	이서영	웰니스산업융합학부	031-670-5232	010-5420-3453	seoyeong@hknu.ac.kr	
		부회장	김원철	브라이트칼리지	031-670-5266	010-7115-5054	wonchulkim@hknu.ac.kr	
		부회장	권진	재활복지학부	031-610-4817	010-7610-4817	jink2266@hknu.ac.kr	
		사무처장	이윤석	생명공학부	031-670-5332	010-3814-8660	yoonseok95@hknu.ac.kr	
		사무처장	이준구	동물생명융합학부	031-670-5092	010-4032-7040	junkoo@hknu.ac.kr	
		■ 사무실 : 이메일 eprof@hknu.ac.kr / 전화 031-678-4782 / 담당자 장지윤 ■ 주소 : (1757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회관						
36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교수회평의회	의장	이용기	역사교육과	043-230-3690	010-6315-8785	yache@knue.ac.kr	2024. 3. ~ 2026. 2.
		부위원장	정은영	미술교육과	043-230-3711	010-6217-6454	eyjung313@knue.ac.kr	
		사무총장	최태진	지구과학교육과	043-230-3659	010-4139-4129	tchoi@knue.ac.kr	
		■ 사무실 : 이메일 faculty@knue.ac.kr / 전화 043-230-3018 (교수지원과) / 담당자 구경화 ■ 주소 : (2817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회관 교수회평의회						
3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교수협의회	회장	변지원	중어중문학과	02-3668-4570	010-6380-0368	jwbyun@mail.knou.ac.kr	2024. 4. ~ 2025. 3.
		부회장	이호형	법학과	02-3668-4599	010-3788-8953	hohalee@mail.knou.ac.kr	
		사무총장	정재화	컴퓨터과학과	02-3668-4651	010-9590-1905	jaehwachung@mail.knou.ac.kr	
■ 사무실 : 이메일 jaehwachung@mail.knou.ac.kr / 전화 02-3668-4651 / 팩스 02-3673-2384 / 담당자 정재화 ■ 주소 : (030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5층 컴퓨터과학과								

38	한국체육 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안성환	체육학	02-410-6835	010-8776-6754	answ007@knsu.ac.kr	2023. 12. ~ 2024. 8.
		수석부의장	장갑석	체육학	02-410-6861	010-6278-5252	jang@knsu.ac.kr	
		부의장						
		이사	박영만	체육학	02-410-6833	010-2215-3268	bir1002@knsu.ac.kr	
■ 사무실 : 이메일 answ007@knsu.ac.kr / 전화 02-410-6835 ■ 주소 :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실내수영장 3층 305호								
-	서울교육 대학교 교수협의회 (공석)	회장						
		부회장						
■ 사무실 : ■ 주소 : (066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교육대학교								
-	경북대학교 교수회 (탈퇴)	의장	오정일		053-950-5476	010-2981-5056	jo31@knu.ac.kr	2024. 3. ~ 2026. 2.
		부의장	김규만		053-950-7312	010-9902-6755	gyuman.kim@knu.ac.kr	
■ 사무실 : 이메일 prfa@knu.ac.kr / 전화 053-950-5015 / 팩스 053-959-5266 / 담당자 배원미 ■ 주소 :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북지관 3층 교수회								

자료 4.

제27대 국교련 상임위원회

구분	직책	성명	소속대학	연락처	이메일	임기
국교련 사무처	상임회장	김정구	부산대학교	010-5093-3733	kimjg@pusan.ac.kr	2024. 3. ~ 2025. 2.
	사무총장	김지현	부산대학교	010-2554-1071	drbusan@naver.com	
	전문위원 (기획간사)	현경운	부산대학교	010-4935-3977	newknupa@naver.com	
	■ 사무실 : 이메일 newknupa@naver.com / 전화 051-510-1396 / 팩스 051-515-2236 ■ 주소 :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교수회관 2층					
공동회장단	공동회장	장진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010-2434-9706	jh.jang@kumoh.ac.kr	2024. 3. ~ 2025. 2.
	공동회장	임정묵	서울대학교	010-3111-9111	limjm@snu.ac.kr	
	공동회장	김동근	전북대학교	010-3717-4153	kdgsu@jbnu.ac.kr	
	공동회장	양창용	제주대학교	010-4341-0406	chejujucy@jejunu.ac.kr	
	공동회장	배성제	춘천교육대학교	010-4357-7291	bae7291@cnu.ac.kr	
	공동회장	최인호	충남대학교	010-9406-4719	iamchoi99@cnu.ac.kr	
	공동회장	공홍식	한경국립대학교	010-9089-5307	kebinkhs@hknu.ac.kr	
	공동회장	강은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010-7337-0053	es kang@kmou.ac.kr	
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	이병운	부산대학교	010-8500-0877	bwnlee@pusan.ac.kr	2024. 3. ~ 2025. 2.
	고문	유진상	국립창원대학교	010-4223-0482	doosmin@changwon.ac.kr	
	자문위원	배득렬	충북대학교	010-9755-2694	wravo6@chungbuk.ac.kr	
	자문위원	신정호	국립목포대학교	010-2602-3032	modernchina@hanmail.net	
	자문위원	조정호	한국체육대학교	010-9113-0066	answ007@knsu.ac.kr	
정책위원	정책위원장	박태현	강원대학교	010-8399-4141	pth73@kangwon.ac.kr	
	정책위원	(공석)				
감사	감사위원	안성환	한국체육대학교	010-8776-6754	answ007@knsu.ac.kr	
	감사위원	민병익	경상국립대학교	010-4313-7470	min@gnu.ac.kr	

